

主客顛倒 [주객전도]

주관과 객관이 뒤바뀌다

/ 2021 수능국어 Laplace /

WEEK2 2009학년도 LEET

오늘날 우리는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의 내용에 구속될 뿐 아니라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소송을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합의에 관한 이러한 이해는 비교적 최근에야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로마의 법률가들이나 중세 영국의 판사들은 단순히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당사자가 합의의 내용에 구속된다고 보지는 않았다. 그뿐 아니라 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곧 소송을 통해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그들에게는 매우 낯선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합의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제하는 것과 합의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확연히 구분되는 일이었으며, 소송은 기본적으로 전자를 위한 수단이었지 후자를 위한 수단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로마의 법률가들은, 만일 당사자가 어떤 노예를 해방하기로 하고 돈을 받아 놓고도 그 노예를 해방하지 않고 있다면 받은 돈을 되돌려 주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굳이 그 노예를 해방하도록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그들은 합의는 준수되어야 한다는 선협적인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사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구체적인 분쟁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물음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합의의 구속력에 대한 이 같은 인식에 변화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다. 우선 합의를 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통해 구제될 필요가 있는 손해의 발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사 학자들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16세기 중반까지 대체로 안정적이었던 영국의 물가가 16세기 후반 갑자기 상승 국면으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경제 지표의 변화 시점은 영국의 판사들이 소송을 통한 합의의 이행 강제도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꾼 시점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A]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도 매도인이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이행할 시점 사이에 목적물의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같은 가격에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가격이 상승했다면 비싼 가격에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므로 가격 차이는 고스란히 손해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학자들은 경제 여건의 변화가 소송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해석한다.

그러나 경제 여건의 변화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 ‘형식의 옷을 입지 않은 합의만으로는 소권(訴權)이 생기지 않는다’는 로마법 이래의 원칙을 파기하려면 법리적 정당화가 수반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세의 세속법 학자들은 그러한 정당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다수의 영국 판사들이 소송을 통한 합의의 이행 강제에 반대했던 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들의 이러한 형식법적 사고방식을 과감히 뛰어넘는 데 필요한 힘은 교회로부터 나왔다. 중세의 교회법은 자연법적 색채가 강했으며, 교회의 윤리 신학자들은 오직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그 자체를 양심의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고자 했다. 이러한 실질법적 사고방식은 이미 13세기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의 훈령 속에 ㉡ ‘합의는 어떠한 형식의 것이든 준수되어야 한다’는 조항으로 규정되었고, 결국 16세기 후반 영국 세속법의 변화에도 법리적인

정당화를 제공해주었다. 이후 합의의 형식적 측면보다는 실질적 측면이 더 강조되었다. 즉 합의는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당사자를 구속하며 그 이행은 강제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16세기 후반 우여곡절 끝에 영국 법원의 공식적 입장이 전환되기는 했지만 판사들 간의 논란은 종식되지 않았다. 과거의 전통을 지지하는 판사들은 여전히 형식의 옷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합의의 구속력이 논란의 여지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200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주목하는 학자들은 16세기 후반 이후 약 200년간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합의의 이행을 강제하는 법 제도가 점차 당연하고도 정의로운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19세기의 법률가들이 인간 중심적인 근대 철학에 기초하여 합의의 구속력의 근거를 새로운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19세기의 법률가들은 합의의 구속적 성격이 인간의 자율성에서 도출된다고 보았다. 인간은 자율적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합의한 바에 구속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로마 시대의 법률가들은 원칙에 따른 일관성보다는 현실적인 고려를 중시하였다.
- ② 중세 영국의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소송을 손해의 구제 수단으로 여겼다.
- ③ 16세기 후반의 영국 판사들은 소송을 통한 합의의 이행 강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 ④ 중세의 윤리 신학자들은 윤리적인 관점에서 합의 준수 의무를 인정하였다.
- ⑤ 19세기의 법률가들은 근대 철학이 합의의 구속력을 설명하는 논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보았다.

2. 윗글의 문맥에 따를 때 ㉠, ㉡으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합의의 내용에 따라 그것의 구속력 여부가 결정됨을 뜻한다.
- ② ㉠은 합의의 불이행만으로는 소권이 부여되기에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 ③ ㉡은 19세기에도 통용된 법 원칙이다.
- ④ ㉡은 합의의 형식에 따라 그것의 구속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 ⑤ ㉠과 ㉡은 합의의 구속력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도 변화의 원인을 경제적 변인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중심 개념에 대한 이해의 변화를 역사적 측면에서 기술하고 있다.
- ③ 중심 개념의 분석을 통해 그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
- ④ 중심 개념에 대한 오늘날의 통념적인 이해가 타당하지 않음을 논증하고 있다.
- ⑤ 과거의 사례에서 전범(典範)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4.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추가 문항)

—<보 기>—

A국에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은 10억 원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1달 후, 갑은 변심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을은 부동산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매도인 병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단, A국의 물가는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부터 1달 후 물가가 30% 상승하였다.)

- ① 갑과 을의 계약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A국의 물가 상승이 없다면 손해를 보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겠군.
- ② 갑과 을의 계약이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겠군.
- ③ 을과 병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되었다면 을은 갑과의 계약 이행보다 3억 원의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겠군.
- ④ 을과 병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되었다면 A국의 물가 상승이 없더라도 소송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겠군.
- ⑤ 을과 병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시점에서 갑의 이익과 을의 손해의 합은 6억 원이겠군.

유사 기출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9.11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다.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다. 하지만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는 약속과는 다르다.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이때의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 예로 매매 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이처럼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킨다.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 한다.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동산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다. 갑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 전액을 금전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달라고 청구하여도 을은 인도해 주지 않았다. 이런 경우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 소송법이나 민사 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갖추어져 있다. 갑은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써 자기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강제 집행은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의 과실로 불이 나 그림 A가 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다. 소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은 ㉢나올 수 없다.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이행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 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때의 계약 해제는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데에 을의 승낙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

행위를 단독 행위라 한다.

갑은 계약을 해제하였다. 이로써 그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이 된다. 당연히 계약의 양 당사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원상회복 청구권이다. 계약의 해제로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5.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실체법에는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 ② 절차법에 강제 집행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③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④ 법원을 통하여 물리력으로 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
- ⑤ 실현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6.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매도인의 청구와 매수인의 이행으로 소멸한다.
- ② ㉡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사 표시가 작용하여 성립한 것이다.
- ③ ㉠과 ㉡은 ㉠이 이행되면 그 결과로 ㉡이 소멸하는 관계이다.
- ④ ㉠과 ㉡은 동일한 계약의 효과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다.
- ⑤ ㉠에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에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7. ㉢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을’의 과실로 이행 불능이 되어 ‘갑’의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
- ② ‘갑’은 소를 제기하여야 매매의 목적이 된 재산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 ③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그림 A’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 ④ ‘갑’과 ‘을’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행 불능이 되었다.
- ⑤ ‘을’이 ‘갑’에게 ‘그림 A’를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을’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8.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유언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고 의사 표시의 상대방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증여와 차이가 있다.

- ① 증여, 유언, 매매는 모두 법률 행위로서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한다.
- ② 증여와 유언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점이 공통된다.
- ③ 증여는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매와 차이가 있다.
- ④ 증여는 당사자 일방만이 이행한다는 점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이행하는 관계를 갖는 매매와 차이가 있다.
- ⑤ 증여는 양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서로 합치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의사 표시의 합치가 필요 없는 유언과 차이가 있다.

9.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오랜 연구 끝에 만족할 만한 실험 결과가 나왔다.
- ② 그 사람이 부드럽게 나오니 내 마음이 누그러졌다.
- ③ 우리 마을은 라디오가 잘 안 나오는 산간 지역이다.
- ④ 이 책에 나오는 옛날이야기 한 편을 함께 읽어 보자.
- ⑤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

VOD(Video on Demand)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서버가 네트워크를 통해 비디오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동시에 수신 측에서 이와 연동하여 이를 재생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전송될 때는 허용 시간 내에 데이터가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공중파 방송처럼 데이터를 통신망으로 퍼뜨리는 형태를 취한다. 콘텐츠의 전송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정의되는 채널을 통해 일어나는데, 한 채널은 콘텐츠 데이터 블록의 출구 역할을 하며 단위 시간당 전송하는 데이터의 양을 의미하는 '대역'으로 그 크기를 나타낸다. 한편 한 서버가 가지는 수용 가능한 대역의 크기, 즉 최대 전송 능력을 '대역폭'이라고 하고 초당 전송 비트 수로 나타낸다.

VOD의 여러 방법 가운데 사용자의 요청마다 각각의 채널을 생성하여 서비스하는 방법을 'RVOD(Real VOD)'라고 한다. 각 전송 채널이 사용자별로 독립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직접 '일시 정지', '빨리 감기' 등과 같은 실시간 전송 제어를 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편리성이 높고, 제한된 대역폭으로도 다양한 콘텐츠의 동시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러나 동시 접속 사용자의 수에 비례하여 서버가 전송해야 하는 전체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므로, 대역폭의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는 동시 접속이 가능한 사용자의 수에 한계가 있다.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NVOD(Near VOD)는 일정 시간 동안에 들어온 서비스 요청을 묶어 한 채널에 다수의 수신자가 동시에 접속되는 형태를 통해 서비스하는 방식이다. NVOD의 한 채널은 동시 접속 수신자 수에 상관없이 일정한 대역을 필요로 하므로 동시 접속 사용자 수의 제한을 극복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일정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다.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용자가 서비스 요청을 취소하지 않고 참을 수 있는 대기 시간을 '허용 대기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VOD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시간 분할 NVOD'는 동일 콘텐츠가 여러 채널에서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다. 사용자는 요청 시점 이후 대기 시간이 가장 짧은 채널에서 수신 대기하게 되고, 그 채널의 전송이 데이터 블록의 첫 부분부터 다시 시작될 때 수신이 시작된다. 이때 대기 시간은 서버의 채널 수나 콘텐츠의 길이에 따라 결정되는데, 120분 길이의 영화를 12개의 채널을 통하여 10분 간격으로 전송하면 대기 시간은 10분 이내가 된다. 대기 시간을 줄려면 많은 수의 채널이 필요한데, 1분 이내로 만들려면 120개의 채널이 필요하다.

'데이터 분할 NVOD'는 콘텐츠를 여러 데이터 블록으로 나누고 각각을 여러 채널에서 따로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대기 시간을 조절한다. 첫 번째 블록을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이어지는 블록의 크기가 순차적으로 2배씩 증가하면서도 블록 수가 이용 가능한 채널 수만큼 되도록 전체 콘텐츠를 나눈다. 각 채널에서는 순서대로 할당된 블록의 전송을 동시에 시작하고, 각 블록의 크기에 따라 주기적으로 전송을 반복한다. 수신 측은 요청 시점 이후 첫 번째 블록부터 순서대로 콘텐츠를 받게 되는데, 블록의 수신이 끝나면 이어질 블록이 전송되는 채널로 자동 변경되어 그 블록의 시작 부분부터 수신된다. 단, 채널의 대역이 콘텐츠의 재생에 필요한 것보다 2배 이상 커야만 이미 받은 분량이 재생되는 동안 이어질 블록의 수신에 보장되고 연속 재생이 가능하다.

이 방법은 첫 블록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므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앞선 예에서 120분 분량을 2배속인 6개의 채널을 통해 서비스하면 대기 시간은 1분 이내가 된다. 따라서 시간 분할 방법에 비해 동일한 대역폭을 점유하면서도 대기 시간을 9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으며, 대기 시간 대비 사용 채널 수가 줄어들어 한 서버에서 동시에 서비스 가능한 콘텐츠의 종류를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콘텐츠의 전송에 걸리는 시간이 콘텐츠의 전체 재생 시간의 절반 이하이므로 각 채널이 2배 이상의 전송 능력을 유지해야 하며, 콘텐츠의 절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수신 측에 반드시 필요하다.

NVOD는 공통적으로 대기 시간 조절을 위해 다중 채널을 이용하므로 서비스에 필요한 일정한 대역폭을 늘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콘텐츠당 동시 접속 사용자가 적을 경우에는 그리 효율적이지 못하다. 극단적으로 한 명의 사용자가 있을 경우라도 위의 예에서는 6개의 채널에 필요한 대역폭을 점유해야 하므로 네트워크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

1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RVOD에서 콘텐츠 전송에 필요한 대역의 총합은 동시 접속 사용자 수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 ② 시간 분할 NVOD와 데이터 분할 NVOD에서는 모두 재생 중에 수신 채널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
- ③ 시간 분할 NVOD에서는 크기가 다른 데이터 블록이 각 채널에서 반복 전송된다.
- ④ 데이터 분할 NVOD에서 데이터 블록의 크기는 사용 채널 수에 상관없이 결정될 수 있다.
- ⑤ 데이터 분할 NVOD에서 각 채널의 전송 반복 시간은 데이터 블록의 재생 순서에 따라 다음 채널로 넘어가면서 2배씩 증가한다.

11. NVOD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 콘텐츠당 사용되는 채널의 수를 늘리면 사용자의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 ② 한 채널당 수신자의 수가 다수일 수 있으므로 '일시 정지'와 같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기 어렵다.
- ③ 시간 분할 NVOD에서는 적어도 사용 채널의 수보다 많은 수의 동시 접속 사용자가 있어야 RVOD에 비해 서버에서 보내는 전체 데이터량의 감소 효과가 있다.
- ④ 동일한 대역폭을 가지는 서버가 한 개의 콘텐츠만 전송한다고 할 때 데이터 분할 NVOD는 시간 분할 NVOD의 절반에 해당하는 채널 수를 사용한다.
- ⑤ 데이터 분할 NVOD는 수신 측의 저장 공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저장 공간에 제한이 있을 경우 콘텐츠의 크기가 너무 크면 전체 내용의 재생이 어렵다.

12. 어느 지역에 VOD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보기>와 같이 기초 자료를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시간대별로 VOD 서비스 방식을 결정할 때, 가장 적절한 선택은?

<보 기>			
조사 항목 \ 시간	아침, 낮	저녁, 밤	심야
서비스 요청자 수는 얼마나 많은가?	많다	많다	적다
요청 콘텐츠의 수는 얼마나 많은가?	적다	보통	많다
허용 대기 시간은 얼마나 긴가?	길다	보통	짧다

	아침, 낮	저녁, 밤	심야
①	RVOD	시간 분할 NVOD	데이터 분할 NVOD
②	시간 분할 NVOD	RVOD	데이터 분할 NVOD
③	시간 분할 NVOD	데이터 분할 NVOD	RVOD
④	데이터 분할 NVOD	RVOD	시간 분할 NVOD
⑤	데이터 분할 NVOD	시간 분할 NVOD	RVOD

유사 기출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8.11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송신기, 채널, 수신기로 구성되며, ㉠ 전송할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부호화 과정을 거쳐 전송한다. 영상, 문자 등인 데이터는 ㉡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이다. 예를 들어 기호 집합 {a, b, c, d, e, f}에서 기호들을 조합한 add, cab, beef 등이 데이터이다. 정보량은 어떤 기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얻는 정보의 크기이다. 어떤 기호 집합에서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적고, 발생 확률이 낮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많다.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최댓값을 갖는다.

송신기에서는 소스 부호화, 채널 부호화, 선 부호화를 거쳐 기호를 ㉢ 부호로 변환한다. 소스 부호화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기호를 0과 1로 이루어진 부호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어떤 기호가 110과 같은 부호로 변환되었을 때 0 또는 1을 비트라고 하며 이 부호의 비트 수는 3이다. 이때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이다. 전송된 부호를 수신기에서 원래의 기호로 ㉣ 복원하려면 부호들의 평균 비트 수가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기호 집합을 엔트로피에 최대한 가까운 평균 비트 수를 갖는 부호들로 변환하는 것을 엔트로피 부호화라 한다. 그중 하나인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적은 부호를, 발생 확률이 낮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많은 부호를 할당한다.

채널 부호화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하여 부호에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다. 송신기에서 부호를 전송하면 채널의 잡음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잉여 정보를 덧붙여 전송한다. 채널 부호화 중 하나인 ‘삼중 반복 부호화’는 0과 1을 각각 000과 111로 부호화한다. 이때 수신기에서는 수신한 부호에 0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0으로 판단하고, 1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1로 판단한다. 즉 수신기에서 수신된 부호가 000, 001, 010, 100 중 하나라면 0으로 판단하고, 그 이외에는 1로 판단한다. 이렇게 하면 000을 전송했을 때 하나의 비트에서 오류가 생겨 001을 수신해도 0으로 판단하므로 오류는 정정된다. 채널 부호화를 하기 전 부호의 비트 수를, 채널 부호화를 한 후 부호의 비트 수로 나눈 것을 부호율이라 한다. 삼중 반복 부호화의 부호율은 약 0.33이다.

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을 채널을 통해 전송하려면 부호들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야 한다. 0 또는 1에 해당하는 전기 신호의 전압을 결정하는 과정이 선 부호화이다. 전압의 ㉤ 결정 방법은 선 부호화 방식에 따라 다르다. 선 부호화 중 하나인 ‘차동 부호화’는 부호의 비트가 0이면 전압을 유지하고 1이면 전압을 변화시킨다. 차동 부호화를 시작할 때는 기준 신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차동 부호화 직전의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이라면 부호 0110은 ‘양, 음, 양, 양’의 전압을 갖는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 수신기에서는 송신기와 동일한 기준 신호를 사용하여, 전압의 변화가 있으면 1로 판단하고 변화가 없으면 0으로 판단한다.

* 평균 정보량 : 각 기호의 발생 확률과 정보량을 서로 곱하여 모두 더한 것.

13. 밑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영상 데이터는 채널 부호화 과정에서 압축된다.
- ② 수신기에는 부호를 기호로 복원하는 기능이 있다.
- ③ 잉여 정보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추가한 정보이다.
- ④ 영상을 전송할 때는 잡음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⑤ 소스 부호화는 전송할 기호에 정보를 추가하여 오류에 대비하는 과정이다.

14. 밑글을 바탕으로, 2가지 기호로 이루어진 기호 집합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모두 1/2인 경우, 각 기호의 정보량은 동일하다.
- ②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각각 1/4, 3/4인 경우의 평균 정보량이 최댓값이다.
- ③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각각 1/4, 3/4인 경우, 기호의 정보량이 더 많은 것은 발생 확률이 1/4인 기호이다.
- ④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모두 1/2인 경우, 기호를 부호화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이 최대가 된다.
- ⑤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각각 1/4, 3/4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발생 확률이 각각 3/4, 1/4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와 같다.

15. 밑글의 ‘부호화’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선 부호화에서는 수신기에서 부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한다.
- ②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정보량이 많은 기호에 상대적으로 비트 수가 적은 부호를 할당한다.
- ③ 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은 채널로 전송하기 전에 잉여 정보를 제거한 후 선 부호화한다.
- ④ 채널 부호화 과정에서 부호에 일정 수 이상의 잉여 정보를 추가하면 부호율은 1보다 커진다.
- ⑤ 삼중 반복 부호화를 이용하여 0을 부호화한 경우, 수신된 부호에서 두 개의 비트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는 정정되지 않는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3점]

—〈보 기〉—

날씨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한다. 날씨는 '맑음', '흐림', '비', '눈'으로만 분류하며, 각 날씨의 발생 확률은 모두 같다. 엔트로피 부호화를 통해 '맑음', '흐림', '비', '눈'을 각각 00, 01, 10, 11의 부호로 바꾼다.

- ① 기호 집합 {맑음, 흐림, 비, 눈}의 엔트로피는 2보다 크겠군.
- ② 엔트로피 부호화를 통해 4일 동안의 날씨 데이터 '흐림비맑음 흐림'은 '01001001'로 바뀌겠군.
- ③ 삼중 반복 부호화를 이용하여 전송한 특정 날씨의 부호를 '110001'과 '101100'으로 각각 수신하였다면 서로 다른 날씨로 판단하겠군.
- ④ 날씨 '비'를 삼중 반복 부호화와 차동 부호화를 이용하여 부호화 하는 경우,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이면 '음, 양, 음, 음, 음, 음'의 전압을 갖는 전기 신호로 변환되겠군.
- ⑤ 삼중 반복 부호화와 차동 부호화를 이용하여 특정 날씨의 부호를 전송할 경우, 수신기에서 '음, 음, 음, 양, 양, 양'을 수신 했다면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일 때 '흐림'으로 판단하겠군.

17. 문맥을 고려할 때, 밑줄 친 말이 ㉠~㉥의 동음이의어가 아닌 것은?

- ① ㉠: 공항에서 해외로 떠나는 친구를 전송(錢送)할 계획이다.
- ② ㉡: 대중의 기호(嗜好)에 맞추어 상품을 개발한다.
- ③ ㉢: 나는 가난하지만 귀족이나 부호(富豪)가 부럽지 않다.
- ④ ㉣: 한번 금이 간 인간관계를 복원(復原)하기는 어렵다.
- ⑤ ㉤: 이 작품은 그 화가의 오랜 노력의 결정(結晶)이다.

오늘날 우리는 온갖 행위들이 '예술'로 인정되는 경우를 자주 본다. 그리고 이 경우 대상의 순수한 예술적 가치 이외의 다른 가치들은 논외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예술만의 고유하고 독자적인 존립을 인정하고 타 영역의 간섭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대변하는 대표적 예술론의 하나가 바로 체계 이론 미학이다. 루만에 의해 개척된 체계 이론은 사회 각 영역이 고유한 자립성을 확보하면서 하나의 '체계'로 분리 독립되는 과정을 분석하는데, 이 이론을 미학에 적용하여 예술을 독자적 체계로 기술하려는 이들은 헤겔의 미학을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단서로 활용하곤 한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예술에 대한 호의적인 결론을 도출하려고 끌어들이는 헤겔의 예술론이 본래는 오히려 예술에 대한 부정적 결론, 즉 '예술의 종언' 명제로 요약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명제가 어떻게 예술 옹호론을 위한 실마리로 전용될 수 있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헤겔 미학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 그는 예술을 '이념의 감성적 현현(顯現)', 즉 절대적 진리의 구체적 형상화로 규정한다. 그는 지고의 가치인 진리를 예술의 내용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술을 종교, 철학과 함께 인간 정신의 최고 영역에 포함시킨다. 이는 예술이 헛된 가상이거나 감성적 도취 또는 광기의 산물이어서 정신의 최고 목표인 진리 매개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플라톤의 판정으로부터 예술을 방어할 수 있는 매력적인 논변일 수 있다. 둘째, 그럼에도 헤겔의 최종적인 미학적 결론은 오히려 이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우리에게 예술은 더 이상 진리가 실존하는 최고의 방식이 아니다. 물론 우리는 예술이 더 융성하고 완전하게 되기를 바랄 수 있다. 그러나 예술의 형식은 더 이상 정신의 최고 욕구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주장이 묘한 인과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즉 이 둘을 하나로 묶으면 ㉠ '예술은 진리 매개가 그것의 과제이기 때문에 종말을 맞는다'가 된다. 다분히 역설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예술관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는 헤겔이 예술의 내용과 형식으로 각각 설정한 '진리'와 '감성'의 상관관계에 있다. 객관적 관념론자인 그는 진리란 '우주의 근본 구조로서의 순수하고 완전한 논리', 즉 '이념'이므로, 그것을 참되게 매개하는 정신의 형식은 바로 그 순수 논리에 대응하는 '순수한 이성적 사유'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 본질상 감성을 형식으로 하는 예술이 이념을 매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인간 정신의 작동 방식이 근본적으로 감성적이어서 아직 이성적 사유 능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었던 먼 과거의 역사적 유년기에 국한되며, 예술이 담당했던 과제가 근대에는 철학으로 이관되었다고 한다. 더욱이 헤겔은 이러한 발전의 방향이 영원히 불가역적이라고 여긴다.

체계 이론가들은 바로 헤겔의 결론인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예술의 진리 매개 가능성'에서 역전을 위한 힌트를 얻는다. 즉 헤겔이 예술의 종언을 선언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들은 예술의 진정한 실존 근거를 찾거니와, 예술을 진리 영역으로부터 '퇴출'시킨 헤겔의 전략은 이들에게는 오히려 오래도록 그것을 짓눌러 왔던 중책으로부터 예술을 '해방'시키는 것을 뜻한다. 그 때문에 근대 이후에 존속하는 예술은 헤겔에게는 '무의미한 잔여물'인 반면, 이들에게는 '비로소 예술이 된 예술'이다. 모든 외적 연관들이 차단됨으로써, 즉 일체의 예술 외적 요구로부터 자유로운 자족적 체계로 분리 독립됨으로써,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의 선택권은 전적으로 예술에게 주어지며, 이에 따라 예술은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많은 것을 내용과 형식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체계 이론의 이러한 예술 해방 전략에는 석연찮은 점이 남아 있다. 왜냐하면 ㉡ 일부 예술가와 예술 애호가들은 예술의 고유한 자립성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진리와 예술의 긍정적 연관을 매력 있게 정당화하는 담론을 미학에서 기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 체계 이론 미학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평가되는 원인은 체계 이론 미학이 헤겔 미학을 전거로 삼으면서 그 원래의 핵심 주제를 방기(放棄)한 데 있다. 따라서 예술계의 중요한 요구를 충족하는 좀 더 의미 있는 예술론이 되려면 체계 이론 미학은 진리와 연관된 예술의 가치를 묻는 물음에 대해서도 긍정적 답변을 줄 수 있는 이론으로 성숙해야 한다.

18. 위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추가 문항)

- ① 현대에는 예술의 독자적인 존립을 인정한다.
- ② 예술만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이들은 사회 각 영역의 고유한 자립성을 인정한다.
- ③ 체계 이론 미학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독자적인 예술을 통해 진리에 대한 탐구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 ④ 근대 이후의 예술은 내용과 형식적인 면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 ⑤ 예술 해방 전략은 사회 영역들이 자족적 체계를 확보하면 하나의 체계로 독립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19.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술이 진리 매개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더라도 정신의 작동 방식이 감성적 단계를 넘어선 시대에는 그 실현 가능성이 없다.
- ② 예술의 본질은 순수한 심미적 가치의 구현이지만, 진리 매개라는 이질적 목적이 개입함으로써 예술의 자율성이 훼손된다.
- ③ 예술이 진리 매개를 그것의 유일한 과제로 삼음으로써 주제의 다양화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 ④ 예술이 진리 매개를 추구하여 매우 난해한 행위로 변함으로써 대중과의 소통이 불가능해진다.
- ⑤ 예술이 진리 매개를 지나치게 지향함으로써 양식적 쇠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20. ㉠가 ㉡를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전적인 학설을 활용했지만, 그것의 핵심적 논점에서 벗어났다.
- ②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했지만, 그것의 현실적 실용화는 미흡했다.
- ③ 유의미한 주제를 제시했지만, 그것의 대중적 공론화가 어려웠다.
- ④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지만, 그것의 인과적 규명에는 실패했다.
- ⑤ 매력적인 가설을 수립했지만, 그것의 경험적 검증에는 실패했다.

21. <보기>의 주장에 대한 ‘헤겔’의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근대에 새로이 출현한 장르인 오페라는 기존의 모든 예술적 요소를 하나의 장르로 통합한 것으로, 고대 그리스의 비극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완전성을 갖춘 종합 예술이다. 오페라의 이러한 통합성은 그 근본 원리 면에서 다음 시대에 이루어질 영화와 뮤지컬의 탄생을 예고한다.

- ① 오페라의 양식적 장대함은 고대 그리스 비극의 현대적 재현이다.
- ② 오페라가 절대적 진리를 담으려면 종합적 기법의 완성도를 더 높여야 한다.
- ③ 오페라의 완성도 높은 양식이 예술의 본래적 가치의 구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④ 오페라의 통합적 성격은 오히려 예술에 더 이상의 양식적 발전이 불가능함을 보여 준다.
- ⑤ 오페라가 가치 있는 장르가 되려면 앞으로 화려한 양식 속에 이성적 사유를 담아내야 한다.

유사 기출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09B

20세기 미술의 특징은 무한한 다원성에 있다. 어떤 내용을 어떤 재료와 어떤 형식으로 작품화하건 미술적 창조로 인정되고, 심지어 창작 행위가 가해지지 않은 것도 ‘작품’의 자격을 얻을 수 있어서, ‘미술’과 ‘미술 아닌 것’을 객관적으로 구분해 주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단토의 ‘미술 종말론’은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미학 이론 중 하나이다. 단어가 주는 부정적 어감과 달리 미술의 ‘종말’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미술 작품이 될 수 있게 된 개방적이고 생산적인 상황을 뜻한다. 그런데 이러한 다원성은 전적으로 새로운 상황일까, 아니면 이전부터 이어져 온 하나의 흐름에 속할까?

작품의 형식과 내용이 전적으로 예술가의 주체적 선택에 달려 있다는 관점에서만 보면, 20세기 미술의 양상은 아주 낯선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르네상스 때 시작된 화가의 서명은 작품이 외부의 주문에 따라 제작되더라도 그것의 정신적 저작권만큼은 예술가에게 있음을 알리는 행위였다. 이는 창조의 자유가 예술의 필수 조건이 되는 시대를 앞당겼다. 즉 미켈란젤로가 예수를 건장한 이탈리아 남성의 모습으로 그렸던 사례에서 보듯, 르네상스 화가들은 주문된 내용도 오직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미지화했다.

형식의 이러한 자율화는 내용의 자기 중심화로 이어졌다. 17세기의 네덜란드 화가들은 신이나 성인(聖人)을 그리던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 친근한 일상을 집중적으로 그리기 시작했고, 19세기 낭만주의에 와서는 내면의 무한한 표출이 예술의 생명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20세기 미술은 예술적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휘라는 일관된 흐름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토가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흐름과는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20세기만의 질적 차별성이다. 이전 시대까지는 ‘미술’과 ‘미술 아닌 것’의 구분은 ‘무엇을 그리는가?’ 또는 ‘어떻게 그리는가?’의 문제, 곧 내용·형식·재료처럼 지각 가능한 ‘전시적 요소’에 의존하여 가능했다. 반면, 20세기에는 빈 캔버스, 자연물, 기성품 등도 ‘작품’으로 인정되는 데에서 보듯, 전시적 요소로는 더 이상 그러한 구분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제 ㉡그러한 구분은 대상이 어떤 것이든 그것에 미술 작품의 자격을 부여하는 지적인 행위, 곧 작품 밖의 ‘비전시적 요소’에 의존할 따름이다. 현대 미술이 미술의 개념 자체를 묻는 일종의 철학이 되고, 작품의 생산과 감상을 매개하는 이론적 행위로서 비평의 중요성이 부각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2.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명의 시작은 주문에 따른 제작에서도 예술가의 주체성을 포출한 사건이었다.
- ② 예술가의 자율적인 이미지 창출은 르네상스 이전부터 보편적이었다.
- ③ 형식의 자율화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들로부터 비롯되었다.
- ④ 현대 미술에서는 내용과 형식이 작품의 자격을 결정한다.
- ⑤ 현대 미술에서는 비평이 전시적 요소를 결정한다.

23. ㉠에 따라 ‘20세기 미술’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거에 비해 예술가의 자율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표출된다.
- ② 자연 그대로의 사물을 전시하는 것도 작품 창작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 ③ 미술을 정의하는 기준이 해체되어 예술 작품 생산이 정체 상태에 이르렀다.
- ④ 미술사적 관점에서 볼 때 과거와의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본질적이다.
- ⑤ 과거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도 미술적 창조로 인정될 수 있다.

24.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뒤샹의 〈샘〉은 소변기에 서명을 하여 전시함으로써 일상품도 이론적 해석에 따라 미술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작품이다.
- ② 브라크의 〈과일 접시와 유리잔〉은 그림에 벽지를 덧붙여 회화를 3차원화함으로써 회화는 2차원적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작품이다.
- ③ 폴록의 〈1950년 32번〉은 캔버스에 물감을 붓거나 떨어뜨려 즉흥적 이미지를 창출함으로써 창조적 무의식과 초현실 세계의 표현을 시도한 작품이다.
- ④ 칸딘스키의 〈컴퍼지션 VIII〉은 구체적인 대상의 묘사 대신 추상적인 색·선·형태만으로 작가의 내면을 표현함으로써 순수 이미지의 언어적 가능성을 모색한 작품이다.
- ⑤ 몬드리안의 〈로드웨이 부기우기〉는 수많은 네모 무늬로 수직·수평의 율동적 흐름을 창출함으로써 뉴욕의 활기찬 생활과 음악적 리듬감의 표현을 추구한 작품이다.

WEEK3 2010학년도 LEET

1789년 프랑스 혁명 초기에 제정된 중간집단 금지에 관한 법들은 개인의 활동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는 동업조합, 상인조합은 물론 정당 활동까지 금지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주체로서의 개인만을 사회에 남겼다. 루소는 이미 국가에서 특수 의지를 표명하는 부분 집단의 존재를 제거하고 각개의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만을 말하게 함으로써 일반의지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이성을 가진 개인의 합리적인 사회적 행위를 통해 일반 이익을 실현하는 국가 권력을 확립하고자 한 것이었다. 하지만 과연 모든 개인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있었고, 공공질서의 문제에 있어서 개인들의 산술적 합으로서의 ‘수’가 이성적인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현실적인 보장도 없었다. 이러한 ‘이성’과 ‘수’의 긴장은 혁명 시기와 이후 프랑스 정치사에서 ‘이성’에 의해 표상되는 자유주의와 ‘수’에 의해 표상되는 민주주의의 갈등으로 표현되었다.

우선 혁명 시기 ‘수’에 대한 ‘이성’의 우위가 드러난 대표적인 예는 ‘수’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제한이었다. 자유주의자들은 선거를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공적인 ‘기능’으로 간주하였다. 선거권의 제한은 공적인 결정을 합리화하고 민주주의라는 ‘수’가 갖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당화되었다. 그들에게 선거는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표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지를 해석하고 일반 이익을 잘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지명하는 행위였다.

혁명이 급진화되면서 ‘수’로 표상되는 인민의 민주주의적 실천이 등장하였다. 외국과의 혁명 전쟁이 시작되면서 조국의 위기가 선언되고,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었던 상퀼로트들도 국민방위대에 들어갔다. 나아가 그들은 자신들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승인하지 않은 법을 거부하고 주권을 직접 행사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상퀼로트들의 힘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로베스피에르는 인민의 민주주의적 실천을 ‘덕성’의 이름으로 제한하였다.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는 공화국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민이 공적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덕성’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하면서 공화국의 제도 안에서만 인민의 정치적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한정하였다. 덕성이란 ‘조국과 법에 대한 사랑’이며, 개인적 이익을 일반 이익에 종속시키는 숭고한 자기희생이었다. 덕성에 대한 강조는 민주주의의 제한과 대표의 절대화—대표와 국민의 일치를 통한 대표의 절대 권력—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1789년 이후 19세기 동안 ‘이성’, ‘수’ 그리고 ‘덕성’ 사이의 긴장 속에서 프랑스는 정치적 혼란의 위협에 시달렸다. 중간집단의 부재를 그 주요 원인으로 들었던 토크빌이 지적했듯이, 민주주의는 혁명을 통해 절대왕정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중앙집권화에 기반한 거대 권력에 의존함으로써 ‘이성’과 ‘덕성’이 약화되어 전제정으로 귀결되었다. 민주주의자이면서 동시에 귀족정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토크빌은 귀족정 시대 중간집단의 역할에 다시 주목하였다. 혁명과 함께 그것들이 사라지면서 개인들은 시민적 덕성을 함양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국가는 그 권력을 제어할 견제 세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토크빌은 ㉠ 민주주의 시대 중간집단이 정치적 자유가 실현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적 덕성을 함양하고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프랑스 혁명을 종결지었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제3공화국은 새로운 사회적 필요에서 중간집단을 다시 허용하였다. 뒤르켐은 분업이 급속하게 진행된 당시 사회에서 직업적 도덕을 형성하고 나아가 국가와 개인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대표의 기능을 수행하는 독자적인 직업 집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프랑스 혁명이 발생한 후 백여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중간집단이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다. 또한 19세기 말 정착되기 시작한 정당 체제는 새로운 엘리트 충원 구조이자 여론의 형성자로서 자리 매김 된다.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색채를 드러내는 정당 체제는 시민과 국가권력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를 통제하는 방식이 되었다.

25. 밑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루소는 일반의지 형성에 방해가 되는 중간집단의 제거를 원하였다.
- ② 혁명 초기 자유주의자들은 선거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장치로 간주하였다.
- ③ 상퀼로트들은 혁명이 급진화된 시기에 등장하여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였다.
- ④ 로베스피에르는 민주주의적 실천을 공화국의 제도 내에 한정하였다.
- ⑤ 뒤르켐은 직업 집단이 국가와 개인 사이의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26. 밑글에 등장하는 ‘수’, ‘이성’, ‘덕성’의 관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성’과 ‘덕성’이 ‘수’를 통제할 장치를 마련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성립되었다.
- ② ‘이성’, ‘덕성’의 견제 능력이 위축되면서 ‘수’의 민주주의는 전제정으로 귀결되었다.
- ③ ‘이성’과 ‘덕성’을 갖추게 됨으로써 ‘수’는 대표 없이 주권의 직접 행사를 통한 자신들의 민주주의를 실현하였다.
- ④ ‘이성’이나 ‘덕성’은 ‘수’의 공적 영역으로의 진입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수’의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였다.
- ⑤ ‘덕성’을 매개로 하여 ‘수’와 ‘이성’을 일치시키려는 시도는 국민과 대표의 동일시를 가져와 절대 권력이 출현하기도 하였다.

27. ㉠에 대한 ‘토크빌’의 기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중간집단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해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학부모 단체
- ② 현대 사회의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견해들을 수렴하고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시민 사회 단체
- ③ 노동자 정당과의 연계 속에서 조합원들의 이익 옹호와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조합
- ④ 경제 현안의 해결과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담당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경제 문제 대책 위원회
- ⑤ 사회적 영향력의 확대를 통해 공론을 주도하고 시민 의식을 함양하며 권력에 대해 비판하는 지식인·학자들의 독자적 집단

유사 기출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11B

사회 이론은 사회 구조나 사회적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이론들을 통칭한다. 사회 이론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면서도 연구 대상뿐 아니라 이론 자체가 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긴밀히 연관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19세기의 시민 사회론을 이야기할 때 그 시대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시민 사회라는 용어는 17세기에 등장했지만, 19세기 초에 이를 국가와 구분하여 개념적으로 정교화한 인물이 헤겔이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럽의 후진국인 프러시아에는 절대주의 시대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었다. 산업 자본주의도 미성숙했던 때여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자본가들을 육성하며 심각한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었다. 그는 사익의 극대화가 국부(國富)를 증대해준다는 점에서 공리주의를 긍정했으나, 그것이 시민 사회 내에서 개인들의 무한한 사익 추구가 일으키는 빈부 격차나 계급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는 시민 사회가 개인들이 사적 욕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생활 영역이자 그 욕구를 사회적 의존 관계 속에서 추구하게 하는 공동체적 윤리성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시민 사회 내에서 사익 조정과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직업 단체와 복지 및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행정 조직의 역할을 설정하면서, 이 두 기구가 시민 사회를 이상적인 국가로 이끌 연결 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빈곤과 계급 갈등은 시민 사회 내에서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국가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적 질서를 확립할 최종 주체로 설정하면서 시민 사회가 국가에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사회는 혁명을 이끌었던 계몽주의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사회는 사익을 추구하는 파편화된 개인들의 각축장이 되어 있었고 빈부 격차와 계급 갈등은 격화된 상태였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 단체와 고용주 단체 모두를 불법으로 규정한 르 샤플리에 법이 1791년부터 약 90년간 시행되었으나, 이 법은 분출되는 사익의 추구를 억제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프랑스 시민 사회를 극도로 위축시켰다. 뒤르켐은 이러한 상황을 아노미, 곧 무규범 상태로 파악하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표방하는 공리주의가 사실은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아노미를 조장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과 공동체적 연대를 실현할 도덕적 개인주의의 규범에 주목하면서, 이를 수행할 주체로서 ㉡직업 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헤겔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르켐은 직업 단체가 정치적 중간 집단으로서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국가에 전달하는 한편 국가를 견제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헤겔과 뒤르켐은 시민 사회를 배경으로 직업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연구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직업 단체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은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두 학자의 시민 사회론이 철저하게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이들의 이론은 과학적 연구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이론이 갖는 객관적 속성은 그 이론이 마주 선 현실의 문제 상황이나 이론가의 주관적인 문제의식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28.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논지를 제시한 후, 대표적인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명료화하고 있다.
- ② 화제를 소개한 후, 예외적인 사례를 배제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일반화하고 있다.
- ③ 주장을 제시한 후, 예상되는 반증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④ 쟁점을 도출한 후, 각 주장의 근거 사례를 비교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 ⑤ 주제를 제시한 후, 동일한 사례를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초점화하고 있다.

2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9세기 초 프러시아에는 절대주의의 잔재와 미성숙한 산업 자본주의가 혼재하였다.
- ② 프랑스 혁명 후 수십 년간 프랑스는 개인들의 사익 추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 ③ 헤겔은 국가를 빈곤 문제나 계급 갈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최종 주체라고 생각하였다.
- ④ 뒤르켐은 혁명 이후의 프랑스 사회를 이기적 욕망이 조정되지 않은 아노미 상태로 보았다.
- ⑤ 헤겔과 뒤르켐은 공리주의가 시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30. ㉠과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 실현을 추구한다.
- ② 국가를 견제하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 ③ 치안 및 복지 문제 해결의 기능을 담당한다.
- ④ 공리주의를 억제하고 도덕적 개인주의를 수용한다.
- ⑤ 시민 사회 외부에서 국가와의 연결 고리로 작용한다.

31. 윗글의 글쓴이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
- ② 객관적 사회 이론은 이론가의 주관적 문제의식과 무관하다.
- ③ 시·공간을 넘어 보편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사회이론이 성립할 수 있다.
- ④ 과학적 연구 방법에 의거한 사회 이론은 사회 현실의 문제 상황과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다.
- ⑤ 사회 이론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 이론이 만들어진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된다.

조선시대의 실정법 체계는 한편으로 <대명률(大明律)>과 또 한편으로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등 국전(國典)의 양대 지주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를 전율(典律) 체제라고 한다. 이러한 체제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당초에 조선의 건국자들은 조선을 성문법에 의하여 전일적(全一的)으로 통치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국전 편찬을 시작하려 했지만 그 완비까지는 시일이 걸리므로 가장 시급한 과제부터 처리하려 했다. 그것은 형사 사법 체계 혼란의 극복이었다. 조선의 건국자들은 그 해결책으로 기성의 형법을 그대로 가져와 쓰는 방안을 택하였다. 그리하여 명나라에서 만든 형사법인 <대명률>이 수용되었는데, 태조의 즉위 교서는 이를 언급하고 있다. 이 <대명률>은 보편적인 범죄의 다양한 양상을 일관된 체계 하에 규정하면서도 신분의 차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명률>은 그것이 외국의 형법이었기 때문에 국전의 편찬과 맞물려 다양한 수용 양태를 보였다. 첫째, <대명률>에 따라 조선의 관행이 변경되는 것이었다. 예컨대 죄질에 상관없이 칼[枷]을 씌우고 있던 조선의 행형 관행이 장형(杖刑) 이상의 범죄에만 칼을 씌우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둘째, <대명률>의 규정이 조선의 실정에 맞추어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예컨대 처제와 형부 간의 간통의 경우 <대명률>에 의하면 일반 간통으로 처벌되나, 조선에서는 데릴사위제를 취하던 전통에 따라 일반 간통보다 가중하여 처벌하였다. 둘째의 경우 중 국전에 수록되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자식이 부모를 고발한 경우 <대명률>은 무고(誣告)가 아닌 이상 사형보다 낮은 형벌로 규정하였지만, 국전은 사형으로 규정하였다. 셋째, <대명률>에는 없었지만 형사 사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차적 규정을 국전에 두기도 하였다. 예컨대 지방의 관찰사가 사형 판결을 직접 내릴 수 없게 한 규정이 그것이다.

한편 전 국토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성문 법전의 완비에는 시일이 걸렸다. 그 이유는 조선 후기까지 이어진 독특한 법전 편찬 과정에 있었다. 조선시대 제정법의 원천은 왕명이었는데 이를 통상 '수교(受敎)'라고 한다. 보통 관청이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왕에게 보고하고 왕이 이를 승인하면 이것은 당해 관청에 대해서 유효한 입법으로 성립하였다. 그런데 수교는 계속하여 쌓여 갔고, 전후의 수교 간에 그리고 서로 다른 관청에 내려진 수교 간에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법전 편찬은 전 국토의 전일적 지배와 함께 수교 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각 관청에 내려진 수교 중에서 계속하여 적용할 것을 선택하고 수정하여 육조(六曹)의 행정 체계에 따라 이를 편찬하였다. 이 작업의 최초 결과물은 <경제육전(經濟六典)>으로 이것이 최초의 국전이었다. 그 뒤 새로운 수교가 쌓이자 이 수교들을 모아서 <속육전(續六典)>을 편찬하였는데 <경제육전>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문제는 고법(古法)인 <경제육전>과 모순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결하였다. 또한 일시 시행되는 수교를 따로 수록한 국전인 '등록(謄錄)'을 별도로 발간하였다. 그리고 이 두 방식을 이후 법전 편찬의 원칙으로 삼았다. 그러나 <속육전>의 증보와 등록의 발간만으로는 수교 간의 충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전대의 국전들을 모아서 수정하고 산삭(刪削)하여 이들을 대체하는 법전을 편찬하게 되는데 이것이 <경국대전>이다.

<경국대전> 중의 형전(刑典)은 <대명률> 수용 과정의 산물이었다. 일반적인 범죄의 처벌은 <대명률>에 따르고, 조선의 특별한 사정에 관련된 규정은 따로 만들어 <경국대전> 형전에 수록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전율의 관계는 “<경국대전>에 의하여 <대명률>을 쓰되, <경국대전>, <속대전>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전에 따른다.”라고 한 <속대전> 형전의 용률조(用律條)에서 확인된다.

32. 윗글의 서술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경제육전>과 <속육전>은 <경국대전>을 보완하였다.
- ② '등록'에 수록된 수교는 <경국대전>에 포함되지 않았다.
- ③ <경국대전>의 편찬 이후에 수교는 법전 편찬에 사용되지 않았다.
- ④ <경국대전>에 수록되지 않은 수교가 '등록'에 수록되어 있기도 하였다.
- ⑤ <경제육전>에 수록된 수교는 <속육전>에 수록된 수교와 입법 시기가 겹치기도 하였다.

33. 윗글로부터 조선시대의 법 제도에 관하여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앙집권화를 위한 한 방편으로 외국 형법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 ② 국전들 간의 충돌 문제로 전율 체제의 출현이 지연되었다.
- ③ 법 적용 기간을 고려해 법 종류를 달리하여 편찬하였다.
- ④ 성문법주의를 취하였으나 관습이 고려되기도 하였다.
- ⑤ 법전을 편찬할 때 고법이 존중되고 있었다.

34. 윗글로 보아 타당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조건 : <대명률>, <경국대전>, <속대전>을 적용한다.

ㄱ. 상민(常民)의 살인 사건에서 관찰사는 <대명률>과 국전의 관련 규정 중 후자를 적용하였지만 직접 사형 판결을 내리지 못하였다.

ㄴ. 자식이 아버지를 폭행으로 고발한 사건에서 <대명률>과 <경국대전>의 관련 규정 중 후자를 적용하였다.

ㄷ. 처가 남편의 원수를 살해한 사건에서 <대명률>과 <속대전>의 관련 규정 중 전자를 적용하였다.

ㄹ. 양반의 절도 사건에서 <대명률>에 관련 규정이 있으나 국전에는 없어 처벌하지 못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유사 기출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8.06

유학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을 통해 성인(聖人)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성학(聖學)이라고도 불린다. ‘수기’는 사물을 탐구하고 앎을 투철히 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을 닦는 일이며, ‘치인’은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기치인을 통해 하늘의 도리인 천도(天道)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 이이는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학집요』(1575)를 지어 이 땅에 유학의 이상 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하는데, 그 바탕은 만물을 ‘이(理)’와 ‘기(氣)’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다. 존재론의 측면에서 율곡은 ‘이’를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로 보고, ‘기’를 시간적인 선후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본다. ‘이’와 ‘기’는 사물의 구성 요소로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 율곡은 이처럼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됨이 없이 존재하는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지묘(理氣之妙)라 표현한다.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율곡은 이통기국(理通氣局)을 주장한다. 이것은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이통기국론은, 성인과 일반인이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이’를 갖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이’의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진다. 율곡은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거경(居敬), 경전을 읽고 공부하여 시비를 분별하는 궁리(窮理),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하는 역행(力行)을 기질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양 방법으로 제시한다.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하려는 율곡의 수양론은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려는 경세론으로 이어진다.

대사상가인 동시에 탁월한 경세가였던 율곡은 많은 논설에서 법제 개혁론을 펼쳤는데, 이는 「만언봉사」(1574)에서 잘 나타난다. 선조는 “‘이’는 빈틈없는 완전함이 있고,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근래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재앙으로부터 깨우쳐야 할 도리를 신하들에게 물었고, 율곡이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린 것이 「만언봉사」이다. 여기서 율곡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법제이며,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왕도요, 어진 정치요, 삼강이요, 오류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법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곧, ‘이’라 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류를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에서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은 ‘수교(受敎)’이다. 어떤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고 여겨지면 국왕은 조정의 회의를 열고 처리 지침을 만들어 사건을 해결한다. 이 지침이 앞으로든 같은 종류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겠다고 판단되면, 국왕의 하명 형식을 갖는 법령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수교라 한다. 그리고 이후의 시행 과정에서 폐단이 없고 유용하다고 확인된 수교들은 다시 다듬어지고 정리되어 ‘록(錄)’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전에 실린다. 여기에 수록된 규정들 가운데에 지속적인 적용

을 거치면서 영구히 시행할 만한 것이라 판정된 것은 마침내 ‘대전(大典)’이라는 법전에 오르게 된다.

성종 때에 확정된 《경국대전》(1485)은 이 과정을 거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통일 법전이다. 꾸준한 정련을 거쳐 ‘대전’에 오른 이 규정들은 ‘양법미의(良法美意)’라 하였다. 백성들에게 항구히 시행할 만한 아름다운 규범이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이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국가 기본 법전의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 안에 실린 규정들은 개정되지 않았다. 선왕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오랜 시행으로 검증하여 영원토록 시행할 것으로 판정된 규범은 ‘조종성헌(祖宗成憲)’이라 불렸고, 이는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왕도에 근접하였다고 여긴 것이다. ‘대전’에 실린 규정은 조종성헌으로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국왕이라 해도 그것을 어길 수 없었다.

율곡의 법제 개혁론은 조종성헌을 변혁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는 성종을 이은 연산군 때 제정된 조세 법령이 여전히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실정을 지적하는 등 폐단이 있는 여러 법령들을 거론한다. 이런 법령들은 고수할 것이 아니라 바꾸어야만 한다고 역설한다. 그래야 오히려 조종성헌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결국 조종성헌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을 오래된 선왕의 법이라며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권세가들에 대하여, 그런 법령은 변하지 않아야 할 ‘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적인 공박을 펼친 것이다. 자신의 이기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이루려 했던 율곡 이이의 노력은 수기치인의 실천이라 할 만하다.

3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성학은 하늘의 도리와 합일된 사람이 되기 위한 학문이다.
- ② 『성학집요』에는 유학의 이념이 조선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 ③ ‘수교’는 특정한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 제정된다.
- ④ ‘대전’에 오르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폐단이 없었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⑤ 《경국대전》은 확정된 이후에도 시대에 맞게 규정이 개정되면서 기본 법전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36. ‘율곡’의 관점에서 ‘이’와 ‘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천재지변은 ‘기’의 현상으로서 여기에도 ‘이’가 더불어 존재한다.
- ② ‘기’는 만물에 내재된 법칙이라는 점에서, 시공을 초월하는 ‘이’와 대비된다.
- ③ 법제는 ‘이’에 속하지 않지만 ‘이’를 드러낼 수 있도록 다듬어져야 할 대상이다.
- ④ 탁한 기질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이’라 할 수 있는 선한 본성이 드러나게 할 수 있다.
- ⑤ 모든 사물들은 동일한 ‘이’를 갖지만 서로 다른 ‘기’로 말미암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37. ㉠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기'와 '치인'은 각각 '이'와 '기'의 정화를 통해 '성인'이 됨을 목표로 한다.
- ② '이기지묘'는 '수기'와 '치인'의 상호 대립적이고 분리 가능한 특징을 설명해 준다.
- ③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은 모두 천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④ '이통기국'은 '수기'와 '치인'을 통해 '성인'이 지닌 기질적 병폐의 극복이 가능함을 말해 준다.
- ⑤ '수기'와 '치인'을 위한 기질 변화 방법으로는 독서와 공부를 통해 시비를 분별하는 '역행'이 있다.

38. 윗글의 '율곡'과 <보기>의 '플라톤'의 견해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플라톤은 물질적이고 가변적인 사물들이 존재하는 현실세계와 비물질적이고 불변적이고 완벽한 이데아들이 존재하는 이상 세계를 구분한다. 이데아는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고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지만, 마음속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상 세계에서 영혼으로 존재하면서 이데아를 직접 접했던 인간은, 태어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모든 기억을 상실한다. 물질의 한계로 인해 이데아의 완벽함이 현실 세계에서 똑같이 구현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데아를 가장 잘 기억하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 그것을 이 땅에서 구현해 내려 한다면 그만큼 좋은 국가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 통치자가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철학자 왕'이다.

- ①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달리 물질과 분리됨이 없이 존재한다.
- ②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 ③ 율곡의 '성인'은 플라톤의 '철학자 왕'과 달리 수양보다는 기억에 의존하여 통치한다.
- ④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존재하는 추상적 개념이다.
- ⑤ 율곡이 생각하는 이상 사회는 플라톤의 이상 세계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

39. 윗글에 나타난 '율곡'의 법제 개혁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기론을 바탕으로 한 경세론의 실천으로서 법제 개혁을 주장한다.
- ② '이'와 '기'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는 국왕에게 선왕의 법을 개혁할 것을 건의한다.
- ③ 조종성헌 존중의 전통을 악용하는 이들에 의해 법제 개혁이 가로막히는 경향을 비판한다.
- ④ 삼강과 같은 불변적 가치를 거론하는 까닭은 결국 법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 ⑤ 《경국대전》이 확정된 이후 연산군 때 제정된 악법들은 개혁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4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숙종'을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숙종 25년(1699) 회양부사 갑은 자신이 행차하는데 무례했다는 이유로 선비 을을 잡아 곤장을 쳐서 죽게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숙종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보았으나, 대신들은 형벌을 집행하다가 일어난 일이니 사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올렸다. 이에 숙종은 꾸짖었다. “《경국대전》은 역대 선왕들께서 만들어 한결같이 시행해 온 성스러운 규범이다. 결코 멋대로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국왕에게 법을 잘못 적용하라고 하는가? 갑이 살아서 나가게 되면 무법의 나라가 된다.”

여기서 숙종과 대신들은 아래의 규정들 가운데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하여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가) 《경국대전》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한다.”

(나) 《경국대전》 “관리가 형벌 집행을 남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곤장 100대에 처하고 영구히 관리로 임용하지 않는다.”

(다) 《대명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 ① 숙종은 갑의 행위에 (다)를 적용하는 것이 조종성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군.
- ② 숙종은 완성된 지 20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경국대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 하는군.
- ③ 숙종이 《대명률》의 규정인 (다)를 적용하려는 것은 '대전'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태도라 해야겠군.
- ④ 숙종이 (나)의 적용을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나)가 양법미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군.
- ⑤ 숙종은 선왕의 법을 적용하는 대신들의 방식에는 불만이지만 갑의 행위가 정당한 형벌 집행이라고 보는 데는 동의하는군.

WEEK4 2011학년도 LEET

민간의 채무 계약은 법원에 의해 강제된다. 만약 기업이 채무 상환을 거부한다면 법원의 재판을 통해 자산의 강제 매각 절차나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국가 채무의 경우는 어떠할까? 전통적으로 국가는 스스로의 동의 없이 외국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 원리에 의해 채무의 강제 집행으로부터 보호되어 왔다. 국가의 상업적 거래에는 주권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지만, 여전히 국가 채무의 이행은 법원을 통해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까닭에 많은 경제학자들은 국가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나 구제 절차가 매우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채무가 상환되는 이유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답을 찾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의 출발은 이튼의 고전적 가설이다. 그는 GDP가 감소할 때 채무국이 해외 차입 이외의 방식으로 GDP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고 채무불이행이 신용시장에서의 영구적인 배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신용시장에 다시 접근할 수 없게 된다는 위협이 채무 상환의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보았다.

이후 이 가설은 두 가지 점에서 강한 비판을 받았다. 하나는 GDP가 감소할 때 해외 차입이 총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는 가정에 대한 비판이었다. 불황에 대비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할 경우에는 불황 시 총수요 유지를 위한 해외 차입의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므로 신용시장에서 배제하겠다는 위협의 효과가 약화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채무불이행 시 신용시장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는 가정에 대한 비판이었다. 일단 채무불이행이 일어난 후에는 채권국의 입장에서도 영구 배제보다 신용거래 재개가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증 자료도 이튼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다. 지난 30년 동안 채무불이행을 경험한 국가들은 빠른 시간 내에 국제자본시장에 다시 접근할 수 있었다. 채무불이행 이후 자본시장 접근이 배제되는 기간은 1980년대에는 평균 4년이었으며, 이후에는 2년 이내로 더 짧아졌다.

이튼 이후의 연구자들은 이튼 가설의 가정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새로운 가설을 구축하려고 하였다. 이 가설들은 대략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가설은 채무 상환의 이유를 무역 제재나 자산 동결 같은 채권국의 직접적인 제재에서 찾는다. 둘째 가설은 차입 비용의 상승 같은 신용시장의 반향을 우려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논리에 기초한다. 셋째 가설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국의 국내 경제에 나타나게 될 피해에 주목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실증 작업은 채무불이행 이후 가해진 제재의 효과와 국내 경제적 피해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채권국의 직접적 제재 효과는 주로 무역량의 감소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다. 실제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국가들에서 무역량이 감소한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하지만 무역량 감소 기간이 3~4년 정도로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무역 제재 위협이 채무 이행의 이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신용시장에서의 평판 효과는 차입 금리의 높낮이를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다. 1997~2004년의 자료에 기초한 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채무불이행 이후 1년 동안은 가산 금리가 4% 포인트 상승했지만 2차년도에는 2.5% 포인트로 낮아졌으며, 3차년도 이후에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

다.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가산 금리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빠르게 하락한다는 점에서 신용시장 평판 하락이 채무 이행의 이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끝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국내 경제적 피해 여부는 GDP 증가율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다. 최근의 실증 연구들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은 GDP 증가율을 약 0.6% 포인트, 은행 위기를 동반할 경우에는 2.2% 포인트나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채무불이행 발생 1년 이후부터는 채무불이행이 GDP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일시적 GDP 증가율 하락도 영구적인 손실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GDP 감소를 초래하는 구체적 경로가 밝혀진다면 이 가설의 설명력은 더 커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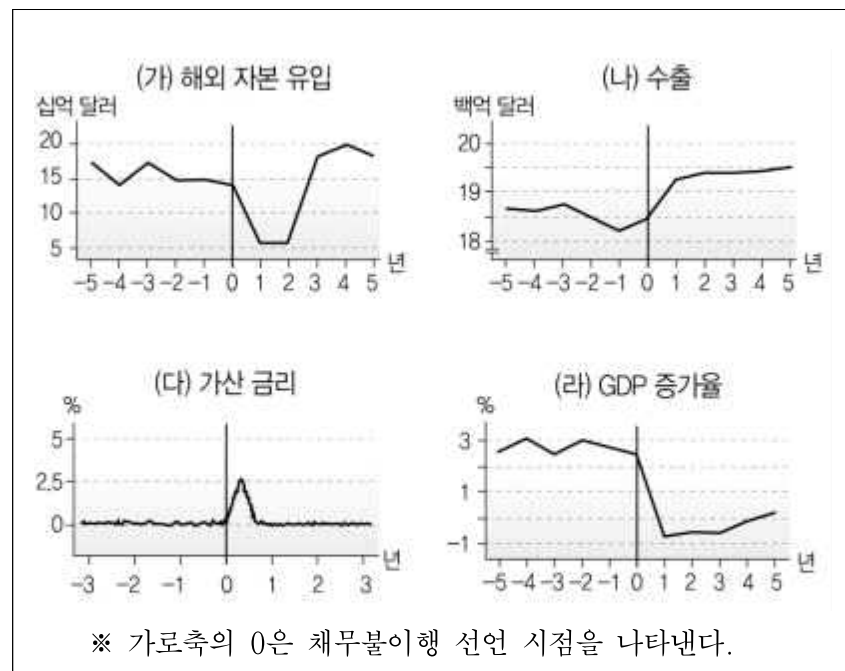
41. 윗글에 제시된 가설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모든 가설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고 있다.
- ② 모든 가설은 국가 채무의 이행이 법적으로 강제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 ③ 고전적 가설은 신용시장에서 채무국을 배제하는 것이 채권국에 영향을 끼친다고 가정하고 있다.
- ④ 가설 중 일부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경제적인 직접 제재 수단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 ⑤ 가설 중 일부는 채무국의 신용 상태가 반영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42.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

- ① 개인들은 외국의 법원에서 주권 면제의 원리가 발생한다.
- ② 오늘날 국가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재판을 받을 수 없다.
- ③ 채무불이행 이후 가해진 제재의 효과는 계량적 분석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
- ④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채무국의 직접적인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
- 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GDP 증가율의 하락은 일시적으로 발생한다.

43.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어느 국가의 경제 변수들의 추이가 아래와 같다고 할 때, 윗글의 내용에 기초하여 이를 바르게 해석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가)는 고전적 가설의 타당성을 약화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 ㄴ. (나)는 첫째 가설의 타당성을 약화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 ㄷ. (다)는 둘째 가설의 타당성을 강화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 ㄹ. (라)는 셋째 가설의 타당성을 강화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유사 기출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9.11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다.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다. 하지만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는 약속과는 다르다.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이때의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 예로 매매 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이처럼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킨다.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 한다.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동산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다. 갑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 전액을 금전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달라고 청구하여도 을은 인도해 주지 않았다. 이런 경우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 소송법이나 민사 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갖추어져 있다. 갑은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써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강제 집행은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의 과실로 불이 나 그림 A가 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다. 소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은 ㉢나올 수 없다.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이행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 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때의 계약 해제는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데에 을의 승낙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

행위를 단독 행위라 한다.

갑은 계약을 해제하였다. 이로써 그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이 된다. 당연히 계약의 양 당사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원상회복 청구권이다. 계약의 해제로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44.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실체법에는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 ② 절차법에 강제 집행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③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④ 법원을 통하여 물리력으로 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
- ⑤ 실현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45.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매도인의 청구와 매수인의 이행으로 소멸한다.
- ② ㉣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사 표시가 작용하여 성립한 것이다.
- ③ ㉠과 ㉣은 ㉠이 이행되면 그 결과로 ㉣이 소멸하는 관계이다.
- ④ ㉠과 ㉣은 동일한 계약의 효과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다.
- ⑤ ㉠에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에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46. ㉡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을’의 과실로 이행 불능이 되어 ‘갑’의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
- ② ‘갑’은 소를 제기하여야 매매의 목적이 된 재산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 ③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그림 A’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 ④ ‘갑’과 ‘을’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행 불능이 되었다.
- ⑤ ‘을’이 ‘갑’에게 ‘그림 A’를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을’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47.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유언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고 의사 표시의 상대방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증여와 차이가 있다.

- ① 증여, 유언, 매매는 모두 법률 행위로서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한다.
- ② 증여와 유언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점이 공통된다.
- ③ 증여는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매와 차이가 있다.
- ④ 증여는 당사자 일방만이 이행한다는 점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이행하는 관계를 갖는 매매와 차이가 있다.
- ⑤ 증여는 양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서로 합치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의사 표시의 합치가 필요 없는 유언과 차이가 있다.

48.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오랜 연구 끝에 만족할 만한 실험 결과가 나왔다.
- ② 그 사람이 부드럽게 나오니 내 마음이 누그러졌다.
- ③ 우리 마을은 라디오가 잘 안 나오는 산간 지역이다.
- ④ 이 책에 나오는 옛날이야기 한 편을 함께 읽어 보자.
- ⑤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

1587년 프랑스의 한 마을 주민들이 포도 농사를 망친 곤충 바구미 떼를 인근 교회 법원에 고소했다. ㉠주민의 변호인은 성서를 인용하여,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권리를 가지며 자연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인간에게 봉사하고 복종하는 데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원에 의해 선임된 ㉡바구미의 변호인은 신은 동물에게 번식과 생존을 명했으며 바구미는 자연법이 인정하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결국 주민들은 바구미의 권리를 인정하되 대체 서식지를 증여하는 계약을 바구미와 체결했다.

당시 유럽에서는 이런 식으로 동물이 교회 권력 혹은 국왕이나 영주 등의 세속 권력에 의해 재판을 받는 일이 있었다. 세속 재판에 회부된 동물 피고는 주로 사람을 죽인 가축들이었다. 돼지가 가장 흔했고, 소, 말, 개도 법정에서 있었다. 교회 재판에서는 인간에게 해를 끼친 작은 동물이나 곤충들이 피고가 되었다. 재판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소송 절차를 엄수하였다. 유죄가 증명되면 세속 법원은 관습법에 따라 사형을, 교회 법원은 교회법에 근거하여 저주와 파문을 선고했다.

동물 재판 관행은 13세기부터 본격화되어 16세기에 정점에 이르렀다. 이 시기 유럽에서는 고대 로마법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세속과 교회에서 법학이 발전하는 등, 근대법을 위한 기반이 다져지고 있었다. 이런 시기에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혹자는 이 물음의 답을 동물과의 충돌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생활 조건과 동물을 의인화하는 민중 문화에서 찾기도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시 성·속의 엘리트들이 이 관행을 이론·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동물 재판은 13세기 이후 공권력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된 새로운 재판 제도하에서 이루어졌다. 중세 초기의 재판 제도는 사실상 개인들의 자력 구제를 재판의 형식에 집어넣은 수준에 불과했다. 민사와 형사 재판의 구별도 모호했고, 공적인 형벌 제도도 없었다. 이에 반해 새로운 재판 제도에서는 합리적인 소송 규칙에 따라 법원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권력이 동물을 상대로 한 소송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동물 재판을 옹호한 엘리트들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성서에 나오는 뱀에 대한 저주의 사례라든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인 소를 돌로 쳐 죽이게 한 모세의 율법 등을 인용하였다. 그것들은 세속 법원과 교회 법원의 동물 재판 관행에 대한 법리적 비판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증거*들이었다. 인간을 포함한 만물은 인간을 정점에 둔 위계적 질서 속에서 신이 부여한 본성에 따라 살아간다고 보는 기독교적 자연법론도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우주의 법질서는 신의 섭리로 간주되는 영원법, 그것을 인간 이성으로 파악한 보편타당하고 불변적인 자연법, 그리고 인간이 정한 인정법으로 구성된다. 인간과 자연은 자연법에 구속되며, 자연법에 반하는 인정법은 법적 효력이 없다.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여 앞의 바구미 사건에서와 같은 논쟁도 가능했고, 동물이 사물의 자연적 질서를 반하면 범죄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도 성립하였다. 엘리트들의 관점에서 동물 재판은 동물을 영원법과 자연법에 복종시키기 위한 엄숙한 절차다. 그들은 동물 재판을 통해 자신들의 법과 정의의 개념을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자연계에까지 적용하고자 했다. 그런 의미에서 동물 재판은 13세기 이후 등장한 인간 중심적 법 개념에 의한 자연의 영유(領有)*를 보여 준다. 이렇게 해서 동물 재판은 엘리트들의 보증하에 민중 문화와 상호 작용하며 현대인의 눈에

기괴하게 보이는 광경을 연출하였던 것이다.

그 시대에 동물 재판이 가졌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가진 문화적 퍼포먼스로서의 기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돼지가 아이를 물어 죽이고 수탉이 달걀을 낳는 사태 앞에서 동물 재판은 판결에 이르는 법적 절차[A]를 통해 사태를 설명하는 서사를 구성하고 ‘본성을 벗어난’ 동물을 처벌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을 극복하고 평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그들의 세계와 질서가 안전하며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증거 : 규칙이나 법칙으로 삼는 근거.

* 영유(領有) : 자기의 것으로 차지하여 가짐.

49. 위글의 동물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교회 법원과 세속 법원이 다른 종류의 형벌을 선고하였다.
- ② 엘리트의 법 관념과 민중 문화 모두에 기초하고 있었다.
- ③ 공권력의 성장이 재판 관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 ④ 기독교적 자연법에 재판 절차에 관한 규칙이 있었다.
- ⑤ 성서적 권위를 통해 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50. [A]에서 언급한 동물 재판의 기능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 ① 사실 관계와 죄책을 규명하여 응보의 근거를 확보하였다.
- ② 신의 징벌을 대행하는 의례를 통해 교회법의 신성함을 수호하였다.
- ③ 인격화된 동물에 대한 재판과 처형을 통해 인간의 속죄 의식을 고양하였다.
- ④ 범죄가 예외 없이 처벌됨을 증명하여 지배 질서의 권위를 과시하였다.
- ⑤ 인간의 규범을 통해 사태에 대한 통합적 해석을 얻고 질서 회복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게 하였다.

51. <보기>는 어떤 소송에서의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을 요약한 것이다. <보기>의 (가), (나)와 윗글의 ㉠, ㉡의 주장을 비교하여 서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가) 원고의 주장

자연과 인간은 하나이고 인간은 자연에 대해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자연물의 고유한 가치를 자연의 권리로 인정하면, 환경 분쟁에서 유효적절하게 기능할 것이다. 현행법이 자연인이 아닌 법인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듯이 자연물에 대해 법적 주체성을 인정하는 법해석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현행법하에서 도롱뇽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나) 법원의 판결

자연의 권리 및 자연물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성문 법률도 없고 그러한 관습법이 통용되고 있지도 않는 이상, 현행법하에서 도롱뇽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위를 보는 (가)의 관점에 대해서 ㉠은 동의할 것이다.
- ㉡ 동물이 권리의 주체가 되려면 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점에서 (가)와 ㉡의 입장은 일치한다.
- ㉢ (나)가 언급하는 법에 대해서 ㉢은 자신이 근거로 삼은 법이 상위의 것이라고 볼 것이다.
- ㉣ 모든 권리가 인정법에 근거하는가에 대해서 (나)와 ㉣의 입장은 일치한다.
- ㉤ (가)와 (나)의 논의에 등장하는 자연의 권리라는 주제에 대해 ㉢과 ㉣은 그것을 신의 섭리 밖의 문제라고 볼 것이다.

유사 기출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09A

법과 정의의 관계는 법학의 고전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법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전통적으로 이런 법을 ‘자연법’이라 부르며 논의해 왔다. 자연법은 인위적으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에 앞서 존재하는 본질적인 것으로서 신의 법칙이나 우주의 질서, 또는 인간 본성에 근원을 둔다. 특히 인간의 본성에 깃든 이성, 다시 말해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인간만의 자질은 자연법을 발견해 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서구 중세의 신학에서는 자연법을 인간 이성에 새겨진 신의 법이라고 이해하여 종교적 권위를 중시하였다. 이후 근대의 자연법 사상에서는 신학의 의존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연법을 오직 이성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경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그로티우스(1583~1645)는 중세의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인간 이성에 따른 자연법의 기초를 확고히 하였다. 그는 이성을 통해 확인되고 인간 본성에 합치하는 법 규범은 자연법이 자 신의 의지라고 말하면서, 이 자연법은 신도 변경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성의 올바른 인도를 통해 다르게 되는 자연법은 국가와 실정법을 초월하는 규범이라고 보았다.

그로티우스가 활약하던 시기는 한편으로 종교 전쟁의 시대였다. 그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법도 존중받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되고, 자연법에 기반을 두면 가톨릭, 개신교, 비기독교 할 것 없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규범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아가 이렇게 이루어진 법 원칙으로써 각국의 이해를 조절하여 전쟁의 참화를 막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1625년 『전쟁과 평화의 법』이란 저서를 낳았다. 이 책에서는 개전의 요건, 전쟁 중에 지켜져야 할 행위 등을 다루었으며,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서 자연법 개념의 기초를 다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론을 구성하였다. 이 때문에 그로티우스는 국제법의 아버지로도 불린다.

신의 권위에서 독립한 이성의 법에는 인간의 권리가 그 핵심에 자리 잡았고, 이는 근대 사회의 주요한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한 예로 1776년 미국의 독립 선언에도 자연법의 영향이 나타난다. 더욱이 프랑스 대혁명기의 인권 선언에서는 자유권, 소유권, 생존권, 저항권을 불가침의 자연법적 권리로 선포하였다. 이처럼 자연법 사상은 근대적 법체계를 세우는 데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였고, 특히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법과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자 현실적으로 자연법을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다는 비판 속에서 자연법 사상은 퇴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때 비판의 선봉에 서며 새롭게 등장한 이론이 이른바 ‘법률실증주의’이다. 법률실증주의는 국가의 입법 기관에서 제정하여 현실적으로 효력을 갖는 법률인 실정법만이 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입법자가 합법적인 절차로 제정한 법률은 그 내용이 어떻든 절대적인 법이 되며, 또한 그것은 국가 권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기에 국민은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합법의 외관을 쓴 전체주의로 말미암은 참혹한 세계 대전을 겪게 되자, 자연법에 대한 논의는 부흥기를 맞기도 하였다. 오늘날 자연법은 실정법

이 지향해야 할 이상을 제시하는 역할에서 여전히 의의가 인정된다.

52. 윗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 ① 실정법은 인간의 경험에 앞서 존재하는 규범이다.
- ② 미국의 독립 선언에 법률실증주의가 영향을 주었다.
- ③ 서구의 근대적 법체계에는 평등의 이념이 담겨 있다.
- ④ 중세의 신학에서는 신의 법에 인간의 이성을 관련시키지 않았다.
- ⑤ 프랑스 대혁명에서 저항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지 않았다.

53.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그로티우스의 국제법 사상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자연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 ② 국가 간에 전쟁을 할 때에도 마땅히 지켜야 할 법 규범이 있다.
- ③ 국제 분쟁을 조정하고 인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국제사회에 적용되는 법이 있어야 한다.
- ④ 각국의 실정법을 두루 통합하여 국제법으로 만들면 그것은 어디서나 통용되는 현실적 규범이 될 수 있다.
- ⑤ 종교의 차이로 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신학 이론을 바탕으로 국제법을 구성하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54.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자연법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국가의 권위만이 자연법에 제한을 둘 수 있다고 생각했다.
- ② 윤리나 도덕과 관련이 없는 근원적인 법 규범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 ③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과 대립하지만 인류를 번영으로 이끈다고 생각했다.
- ④ 인간의 이성이 시공을 초월하는 본질적인 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 ⑤ 자연법의 역할은 실정법에 없는 내용을 보충하는 데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55. <보기>는 윗글을 읽고 쓴 글이다. ㉠~㉥ 중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법과 정의의 관계로 법을 바라볼 때 자연법 사상과 법률실증주의는 서로 마주 보도록 양쪽 끝에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 자연법 사상에서는 법의 내용이 정의로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 법률실증주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라면 그 내용이 정의로운지는 따지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이다. ㉢ 현실적으로 자연법을 뚜렷이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할 때, 법률실증주의를 따르면 실정법만이 법이 되므로, 무엇이 법인지 확정하는 일이 간편하다. 하지만 ㉣ 법률실증주의에 따르면 심각하게 부당한 내용의 법률조차도 입법의 형식만 거쳤다면 법이라고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지만 ㉤ 법률실증주의는 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가의 권위와 같은 형식적인 요소와 함께 국민의 준수 의지라는 도덕적인 근거를 들어 답변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56.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늠할
- ② 가져올
- ③ 기다릴
- ④ 떠올릴
- ⑤ 헤아릴

WEEK2 2009 LEET 분석

오늘날 우리는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의 내용에 구속될 뿐 아니라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소송을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합의에 관한 이러한 이해는 비교적 최근에야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에는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합의’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최근에 생겨난 것이라는 점을 드러냅니다.

과거에는 합의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드러냈는지 차이점을 봅시다.

로마의 법률가들이나 중세 영국의 판사들은 단순히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당사자가 합의의 내용에 구속된다고 보지는 않았다. 그뿐 아니라 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곧 소송을 통해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그들에게는 매우 낮은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합의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제하는 것과 합의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확연히 구분되는 일이었으며, **소송은 기본적으로 전자를 위한 수단이었지 후자를 위한 수단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로마의 법률가들은, 만일 당사자가 어떤 노예를 해방하기로 하고 돈을 받아 놓고도 그 노예를 해방하지 않고 있다면 **받은 돈을 되돌려 주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굳이 그 노예를 해방하도록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그들은 **합의는 준수되어야 한다는** 선형적인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사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구체적인 분쟁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물음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1문단에서는 합의의 구속력과 강제성에 대한 입장을 취한 반면, 과거에는 합의의 내용이 구속력도 없고 소송을 통한 이행 강제에 대해서도 낮은 내용이었네요. why?

그들은 손해를 구제하는 것과 합의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을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소송은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즉, 받은 돈을 되돌려 주는 행위 =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겠네요.

합의의 구속력에 대한 이 같은 인식에 변화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다. 우선 합의를 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통해 구제될 필요가 있는 **손해의 발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사 학자들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16세기 중반까지 대체로 안정적이었던 **영국의 물가가 16세기 후반 갑자기 상승 국면으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경제 지표의 변화 **시점은 영국의 판사들이 소송을 통한 합의의 이행 강제도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꾼 시점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도 매도인이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이행할 시점 사이에 목적물의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같은 가격에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가격이 상승했다면** 비싼 가격에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므로 **가격 차이는 고스란히 손해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학자들은 경제 여건의 변화가 소송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해석한다.

합의의 구속력에 대한 인식 변화의 원인을 알아보네요.

첫 번째 원인으로 손해의 발생 가능성의 증가를 제시합니다. why?

매수인과 매도인의 거래 가격이 100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물가가 일정한 경우, 매도인이 거래를 취소해도 매수인은 다른 사람에게 100이라는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가가 상승할 경우, 매수인은 기존의 100이라는 가격이 아닌 110이라는 가격에 사게 되기 때문에 10이라는 가격 차이가 손해로 남는다는 내용이네요.

그러나 경제 여건의 변화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① ‘형식의 옷을 입지 않은 합의만으로는 소권(訴權)이 생기지 않는다’는 **로마법 이래의 원칙을 파기하려면 법리적 정당화가 수반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세의 세속법 학자들은 그러한 정당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다수의 영국 판사들이 소송을 통한 합의의 이행 강제에 반대했던 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들의 이러한 **형식법적 사고방식을 과감히 뛰어넘는 데 필요한 힘은 교회로부터 나왔다.** 중세의 교회법은 자연법적 색채가 강했으며, 교회의 윤리 신학자들은 오직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그 자체를 양심의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고자 했다. **이러한 실질법적 사고방식은 이미 13세기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의 훈령 속에 ① ‘합의는 어떠한 형식의 것이든 준수되어야 한다’는 조항으로 규정되었고, 결국 16세기 후반 영국 세속법의 변화에도 법리적인 정당화를 제공해주었다.** 이후 합의의 형식적 측면보다는 실질적 측면이 더 강조되었다. 즉 **합의는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당사자를 구속하며 그 이행은 강제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3문단 내용의 한계점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원인을 제시합니다.

3문단은 경제 여건의 변화를 원인으로 봤다면 4문단은 법적인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과거 형식법적 사고방식의 입장을 취하던 시기에는 법리적 정당화가 어렵기 때문에 합의의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지만 ①과 같은 조항이 법리적 정당화를 제공해주어서 실질법적 사고방식을 통해 합의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제시합니다.

16세기 후반 우여곡절 끝에 영국 법원의 공식적 입장이 전환되기는 했지만 판사들 간의 **논란은 종식되지 않았다**. 과거의 전통을 지지하는 판사들은 여전히 형식의 옷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합의의 구속력이 논란의 여지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200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주목하는 학자들은** 16세기 후반 이후 약 200년간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합의의 이행을 강제하는 법 제도가 점차 당연하고도 정의로운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19세기의 법률가들이 **인간 중심적인 근대 철학에 기초하여 합의의 구속력의 근거를 새로운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19세기의 법률가들은 합의의 구속적 성격이 인간의 자율성에서 도출된다고 보았다. **인간은 자율적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합의한 바에 구속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3, 4문단에서 두 가지 원인을 제시했지만 논란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주목하는 학자들은 자신들의 주장들을 계속해서 펼쳤다고 재진술 해주네요.

이번에는 19세기 법률가들이 근대 철학을 근거로 한 원인을 제시해줍니다. 인간이 자율적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합의한 바에 구속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네요.

이렇게 합의의 구속력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 세 가지 주장들을 제시해줬습니다. 문제를 풀러 가봅시다.

[지문에서 그대로 찾을 수 있는 선지는 해설하지 않습니다.]

1. ㉓

㉓ 4문단 “다수의 영국 판사들이 소송을 통한 합의의 이행 강제에 반대했던 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이었다.” 정확히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2. ㉑

㉑ ㉑의 내용은 합의의 구속력을 형식법적 사고방식으로 보는 내용입니다. 합의의 내용에 따라 구속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실질법적 사고방식으로 보는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㉒ ㉑의 내용에 그대로 부합하는 선지입니다.

㉓ 5문단 “16세기 후반 이후 약 200년간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합의의 이행을 강제하는 법 제도가 점차 당연하고도 정의로운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19세기에는 통용된 법 원칙임을 알 수 있습니다.

㉔ ㉔에서는 합의의 형식적인 측면보다 실질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입니다.

㉕ 합의의 구속력에 관하여 ㉑은 형식적인 측면을 ㉔은 실질적인 측면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㉒

㉑ 경제적 변인만이 아닌 추가적으로 두 가지를 제시해주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㉒ 합의의 구속력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시대에 따라 제시하기 때문에 역사적 측면에서의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㉓ 중심 개념인 합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개념 역시 제안하지 않습니다.

㉔ 오늘날과 과거의 이해의 차이를 드러낼 뿐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㉕ ㉔번 선지와 같이 과거의 이해의 차이를 드러낼 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4. ㉔

㉑ A국의 물가 상승이 없다면 을은 다른 사람에게 같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㉒ 갑과 을의 계약이 이행되었을 때,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㉓ 물가 상승이 30% 이루어졌기 때문에 을이 병에게 매수한다면 13억이라는 금액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을이 갑에게 매수하는 가격인 10억 원보다 병과의 계약 이행으로 인해 3억 원의 손해를 봅니다.

㉔ 지문에서 “경제 여건의 변화가 소송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해석한다.”고 제시한다. 따라서 물가 상승이 없었다면 소송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㉕ 을과 병이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갑은 판매하지 않은 부동산이 10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상승하여 3억 원의 이익을 봅니다. 그리고 계약을 이행하는 시점에서 을은 갑과의 계약으로 10억 원에 살 수 있던 부동산을 13억 원에 구매하기 때문에 3억 원의 손해를 봅니다.

VOD(Video on Demand)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서버가 네트워크를 통해 비디오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동시에 수신 측에서 이와 연동하여 이를 재생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전송될 때는 허용 시간 내에 데이터가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공중과 방송처럼 데이터를 통신망으로 퍼뜨리는 형태를 취한다. 콘텐츠의 전송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정의되는 채널을 통해 일어나는데, 한 채널은 콘텐츠 데이터 블록의 출구 역할을 하며 단위 시간당 전송하는 데이터의 양을 의미하는 '대역'으로 그 크기를 나타낸다. 한편 한 서버가 가지는 수용 가능한 대역의 크기, 즉 최대 전송 능력을 '대역폭'이라고 하고 초당 전송 비트 수로 나타낸다.

VOD를 전송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전송은 채널을 통해 일어나고 단위 시간당 전송하는 데이터의 양을 대역으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후에 한 채널은 콘텐츠 데이터 블록의 출구 역할을 한다. 그리고 대역폭의 개념도 나오네요. 가볍게 체크하고 전송하는 과정과 채널에 집중하며 다음 문단을 읽어봅시다.

VOD의 여러 방법 가운데 사용자의 요청마다 각각의 채널을 생성하여 서비스하는 방법을 'RVOD(Real VOD)'라고 한다. 각 전송 채널이 사용자별로 독립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직접 '일시 정지', '빨리 감기' 등과 같은 실시간 전송 제어를 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편리성이 높고, 제한된 대역폭으로도 다양한 콘텐츠의 동시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러나 동시 접속 사용자의 수에 비례하여 서버가 전송해야 하는 전체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므로, 대역폭의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는 동시 접속이 가능한 사용자의 수에 한계가 있다.

사용자별로 독립된 채널을 생성하는 RVOD가 나오네요. 독립된 채널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실시간 전송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서버의 최대 전송 능력인 대역폭의 제한이 있는 경우 동시 접속 사용자 수에 한계점이 있음을 제시합니다. 이에 대한 보완이나 다른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다음 문단을 읽어봅시다.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NVOD(Near VOD)는 일정 시간 동안에 들어온 서비스 요청을 묶어 한 채널에 다수의 수신자가 동시에 접속되는 형태를 통해 서비스하는 방식이다. NVOD의 한 채널은 동시 접속 수신자 수에 상관없이 일정한 대역을 필요로 하므로 동시 접속 사용자 수의 제한을 극복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일정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다.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용자가 서비스 요청을 취소하지 않고 참을 수 있는 대기 시간을 '허용 대기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VOD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줍니다. 그렇게 나타난 NVOD는 시간대별로 사용자를 묶어서 서비스하는 방식이네요. 따라서 RVOD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대를 묶어야 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단점이 있네요. 사용자들이 참을 수 있는 대기 시간이 바로 허용 대기 시간인데 허용 대기 시간의 길이가 VOD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이걸 해결 못하면 단점이 되는 거니까 저는 단점으로 체크해두고 가겠습니다.

'시간 분할 NVOD'는 동일 콘텐츠가 여러 채널에서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다. 사용자는 요청 시점 이후 대기 시간이 가장 짧은 채널에서 수신 대기하게 되고, 그 채널의 전송이 데이터 블록의 첫 부분부터 다시 시작될 때 수신이 시작된다. 이때 대기 시간은 서버의 채널 수나 콘텐츠의 길이에 따라 결정되는데, 120분 길이의 영화를 12개의 채널을 통하여 10분 간격으로 전송하면 대기 시간은 10분 이내가 된다. 대기 시간을 줄이려면 많은 수의 채널이 필요한데, 1분 이내로 만들려면 120개의 채널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NVOD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시간 분할 NVOD가 나옵니다. 이건 여러 채널에서 반복 전송하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예시를 들어줍니다. 120분 길이의 영화를 12개의 채널을 두고 120/12 인 10분 간격으로 전송해준다는 내용이네요. 즉, 최대 대기 시간이 10분이군요.

채널의 수↑ → 대기 시간↓

'데이터 분할 NVOD'는 콘텐츠를 여러 데이터 블록으로 나누고 각각을 여러 채널에서 따로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대기 시간을 조절한다. ① 첫 번째 블록을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이어지는 블록의 크기가 순차적으로 2배씩 증가하면서도 블록 수가 이용 가능한 채널 수만큼 되도록 전체 콘텐츠를 나눈다. ② 각 채널에서는 순서대로 할당된 블록의 전송을 동시에 시작하고, 각 블록의 크기에 따라 주기적으로 전송을 반복한다. 수신 측은 요청 시점 이후 첫 번째 블록부터 순서대로 콘텐츠를 받게 되는데, 블록의 수신이 끝나면 이어질 블록이 전송되는 채널로 자동 변경되어 그 블록의 시작 부분부터 수신된다. 단, 채널의 대역이 콘텐츠의 재생에 필요한 것보다 2배 이상 커야만 이미 받은 분량이 재생되는 동안 이어질 블록의 수신이 보장되고 연속 재생이 가능하다.

이번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 블록으로 나누는 데이터 분할 NVOD가 나옵니다. 1문단에서 제시한 채널의 역할 중 하나인 콘텐츠 데이터 블록의 출구 역할을 끌고 와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발신자 측의 형성 과정과 수신자 측의 수신 과정이 나옵니다. 단, 채널의 대역이 콘텐츠 재생에 필요한 것보다 2배 이상 커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방법은 첫 블록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므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앞선 예에서 120분 분량을 2배속인 6개의 채널을 통해 서비스하면 대기 시간은 1분 이내가 된다. 따라서 시간 분할 방법에 비해 동일한 대역폭을 점유하면서도 대기 시간을 9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으며, 대기 시간 대비 사용 채널 수가 줄어들어 한 서버에서 동시에 서비스 가능한 콘텐츠의 종류를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콘텐츠의 전송에 걸리는 시간이 콘텐츠의 전체 재생 시간의 절반 이하이므로 **각 채널이 2배 이상의 전송 능력을 유지해야 하며, 콘텐츠의 절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수신 측에 반드시 필요하다.**

첫 블록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즉 NVOD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입니다. 솔직하게 예시에 대한 이해가 어렵습니다.

참고만 하시라고 제 사고 과정을 넣어보자면, 채널의 대역이 콘텐츠 재생에 필요한 것보다 2배 이상의 전송 능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첫 블록의 크기를 2a라고 가정한 후, 2배씩 순차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2a, 4a, 8a, 16a, 32a, 64a라 생각하여 총 126a가 나옵니다. 따라서 120/126a로 대기 시간이 1분 이내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건이 나옵니다.
2배 이상의 전송 능력과 콘텐츠 절반에 해당하는 데이터 저장 공간.

NVOD는 공통적으로 대기 시간 조절을 위해 다중 채널을 이용하므로 서비스에 필요한 일정한 대역폭을 늘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콘텐츠당 동시 접속 사용자가 적을 경우에는 그리 효율적이지 못하다.** 극단적으로 한 명의 사용자가 있을 경우라도 위의 예에서는 6개의 채널에 필요한 대역폭을 점유해야 하므로 네트워크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

결국 NVOD는 동시 접속 사용자가 많은 경우에 사용해야 효율적이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0. ⑤

⑤ “첫 번째 블록을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이어지는 블록의 크기가 순차적으로 2배씩 증가하면서도 블록 수가 이용 가능한 채널 수만큼 되도록 전체 콘텐츠를 나눈다.” 콘텐츠 데이터를 분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블록의 크기가 2배 증가하였으니 전송 반복 시간도 2배 증가하게 된다.

11. ④

① 4문단에서 채널의 수↑ → 대기 시간↓ 비례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② RVOD의 장점이자 NVOD의 단점을 묻습니다. NVOD는 1대 다수의 접속 형태이므로 개별적 제어는 불가능합니다.

③ 1대 1의 채널을 구성하는 RVOD와 달리 1대 다수의 채널을 구성하는 NVOD의 경우 채널의 수보다 동시 접속 사용자가 많아 전체 데이터양의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④ 지문에서 나타난 예시를 활용해봅시다. 120분 분량의 콘텐츠를 전송하고자 할 때, 시간 분할 NVOD가 대기 시간 1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20개의 채널이 필요한 반면 데이터 분할 NVOD의 경우 6개면 충분합니다. 절반이 아니죠

⑤ 5문단에 “콘텐츠의 절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수신 측에 반드시 필요하다.” 를 보면 데이터 저장 공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장 공간에 제한이 있을 경우 콘텐츠 크기가 너무 크면 전체 내용의 재생이 어렵다는 것 역시 추론할 수 있겠네요.

12. ③

보기를 분석해야겠네요. 서비스 요청자의 수를 봅시다. NVOD의 공통점은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따라서 서비스 요청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심야 시간에 RVOD를 활용할 수 있겠네요. 아침, 낮에는 요청 콘텐츠 수는 적고 허용 대기 시간이 긴 반면 저녁, 밤에는 전자에 비해 요청 콘텐츠 수는 많고 허용 대기 시간은 짧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시간 분할 NVOD에 비해 동일한 대역폭을 점유하면서도 대기 시간을 90% 이상 감소시킬 수 있고 한 서버에서 동시에 서비스 가능한 콘텐츠의 종류를 늘릴 수 있는 데이터 분할 NVOD를 저녁, 밤에 활용하는 게 적절하겠네요.

오늘날 우리는 온갖 행위들이 '예술'로 인정되는 경우를 자주 본다. 그리고 이 경우 대상의 순수한 예술적 가치 이외의 다른 가치들은 논외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예술만의 고유하고 독자적인 존립을 인정하고 타 영역의 간섭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대변하는 대표적 예술론의 하나가 바로 체계 이론 미학이다. 루만에 의해 개척된 체계 이론은 사회 각 영역이 고유한 자립성을 확보하면서 하나의 '체계'로 분리 독립되는 과정을 분석하는데, 이 이론을 미학에 적용하여 예술을 독자적 체계로 기술하려는 이들은 헤겔의 미학을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단서로 활용하곤 한다.

지문이 '오늘날'로 시작하고 있다. 시간이 나왔을 때에는 다른 시대와의 비교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읽으면 좋습니다. 이 지문의 경우 오늘날로 시작했기 때문에 과거와의 비교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변화 양상에 집중하여 읽어봅시다.

오늘날에는 예술의 독자성에 대한 인식이 보편적이라고 제시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대변하는 이론이 체계 이론 미학이고, 체계 이론 미학은 헤겔의 미학을 이용하여 주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뒤에는 당연히 체계 이론 미학과 헤겔의 미학의 관계를 제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읽어 보자.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예술에 대한 호의적인 결론을 도출하려고 끌어들이는 헤겔의 예술론이 본래는 오히려 예술에 대한 부정적 결론, 즉 '예술의 종언' 명제로 요약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명제가 어떻게 예술 옹호론을 위한 실마리로 전용될 수 있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헤겔의 미학을 이용하여 주장을 정당화한 것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2문단에서 제시한 그대로 이 명제가 어떻게 예술 옹호론을 위한 실마리로 전용될 수 있는지를 따져 봅시다.

헤겔 미학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 그는 예술을 '이념의 감성적 현현(顯現)', 즉 절대적 진리의 구체적 형상화로 규정한다. 그는 지고의 가치인 진리를 예술의 내용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술을 종교, 철학과 함께 인간 정신의 최고 영역에 포함시킨다. 이는 예술이 헛된 가상이거나 감성적 도취 또는 광기의 산물이어서 정신의 최고 목표인 진리 매개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플라톤의 판정으로부터 예술을 방어할 수 있는 매력적인 논변일 수 있다. 둘째, 그럼에도 헤겔의 최종적인 미학적 결론은 오히려 이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우리에게 예술은 더 이상 진리가 실존하는 최고의 방식이 아니다. 물론 우리는 예술이 더 융성하고 완전하게 되기를 바랄 수 있다. 그러나 예술의 형식은 더 이상 정신의 최고 욕구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헤겔 미학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하네요. 먼저, 절대적 진리의 구체적 형상화로 진리를 예술의 내용에 규정하였네요. 이는 플라톤의 예술을 방어하는 논변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둘째는 전자와 모순되는 주장처럼 보이는데 why?

방금까지는 예술을 절대적 진리의 구체적 형상화라고 제시했는데.. 예술의 형식이 더 이상 정신의 최고 욕구가 아니라고 말해서요.

아직까지는 이해가 어렵네요. 다음 문단에서 설명해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주장이 묘한 인과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즉 이 둘을 하나로 묶으면 ㉠ '예술은 진리 매개가 그것의 과제이기 때문에 종말을 맞는다'가 된다. 다분히 역설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예술관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는 헤겔이 예술의 내용과 형식으로 각각 설정한 '진리'와 '감성'의 상관관계에 있다. 객관적 관념론자인 그는 진리란 '우주의 근본 구조로서의 순수하고 완전한 논리', 즉 '이념'이므로, 그것을 참되게 매개하는 정신의 형식은 바로 그 순수 논리에 대응하는 '순수한 이성적 사유'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 본질상 감성을 형식으로 하는 예술이 이념을 매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인간 정신의 작동 방식이 근본적으로 감성적이어서 아직 이성적 사유 능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었던 먼 과거의 역사적 유년기에 국한되며, 예술이 담당했던 과제가 근대에는 철학으로 이관되었다고 한다. 더욱이 헤겔은 이러한 발전의 방향이 영원히 불가역적이라고 여긴다.

앞에서 말한 두 주장을 하나로 묶으면 예술의 종언이 된다고 합니다.

객관적 관념론자인 헤겔에게 진리란 이념이다. 이념을 참되게 매개하는 정신의 형식은 순수한 이성적 사유이다. 그러나 먼 과거의 역사적 유년기에 국한되며, 예술이 담당했던 과제가 근대에는 철학으로 이관되었다.

즉, 헤겔의 의견에 따르면 그동안 예술이 이를 담당한 이유는 먼 과거에 인간이 이성적 사유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이네요.

이제는 이러한 과제가 철학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술의 종언을 주장합니다.

체계 이론가들은 바로 헤겔의 결론인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예술의 진리 매개 가능성'에서 역전을 위한 힌트를 얻는다. 즉 헤겔이 예술의 종언을 선언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들은 예술의 진정한 실존 근거를 찾거니와, 예술을 진리 영역으로부터 '퇴출'시킨 헤겔의 전략은 이들에게는 오히려 오래도록 그것을 짓눌러 왔던 중책으로부터 예술을 '해방'시키는 것을 뜻한다. 그 때문에 근대 이후에 존속하는 예술은 헤겔에게는 '무의미한 잔여물'인 반면, 이들에게는 '비로소 예술이 된 예술'이다. 모든 외적 연관들이 차단됨으로써, 즉 일체의 예술 외적 요구로부터 자유로운 자족적 체계로 분리 독립됨으로써,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의 선택권은 전적으로 예술에게 주어지며, 이에 따라 예술은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많은 것을 내용과 형식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체계 이론가들은 예술의 종언을 주장하는 부분을 그들의 주장의 근거로 삼는다고 합니다. why?

근대 이전에는 예술이 담당하는 과제가 있었지만 근대 이후에는 없기 때문에 독자적인 예술이 탄생한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체계 이론의 이러한 예술 해방 전략에는 석연찮은 점이 남아 있다. 왜냐하면 ㉠ 일부 예술가와 예술 애호가들은 예술의 고유한 자립성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진리와 예술의 긍정적 연관을 매력 있게 정당화하는 담론을 미학에서 기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 체계 이론 미학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평가되는 원인은 체계 이론 미학이 헤겔 미학을 전거로 삼으면서 그 원래의 핵심 주제를 방기(放棄)한 데 있다. 따라서 예술계의 중요한 요구를 충족하는 좀 더 의미 있는 예술론이 되려면 체계 이론 미학은 진리와 연관된 예술의 가치를 묻는 물음에 대해서도 긍정적 답변을 줄 수 있는 이론으로 성숙해져야 한다.

체계 이론가들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지만 일부 예술가와 예술 애호가들이 진리와 예술의 관계를 기대하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고 제시하며 지문을 마무리하네요.

18. ③

- ① 체계 이론 미학이 현대의 보편적인 인식을 대변하면서 예술의 독자적인 존립을 인정합니다.
- ② 체계 이론은 사회 각 영역이 고유한 자립성을 확보하면서 하나의 체계로 분리 독립되는 과정을 분석합니다.
- ③ 체계 이론 미학을 주장하는 이들은 독자적인 예술을 위해 헤겔의 미학을 이용하였습니다. 근대 이전에는 예술이 가진 과제가 있었지만 근대 이후에는 없다! 따라서 독자적인 예술을 통해 진리에 대한 탐구의 필요성은 틀린 선지입니다.
- ④ 지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 ⑤ 지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19. ①

- ① 정신의 작동 방식이 감성적 단계를 넘어선 시대. 즉, 근대 이후에는 근대 이전과 달리 예술이 진리 매개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더라도 예술의 종언을 맞는다는 헤겔의 주장에 부합하는 선지입니다.
- ② 헤겔은 근대 이전에는 예술의 진리 매개를 인정하였으니 틀린 선지입니다.
- ③ 체계 이론가들의 주장입니다.
- ④ ...
- ⑤ ...

추론 문제였으나 나머지 선지들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0. ①

- ① 일부 예술가와 예술 애호가들은 체계 이론 미학이 절반의 성공이라 평가한다고 합니다. ㉡에 속하는 사람들은 예술과 진리 매개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헤겔의 미학을 근거로 삼았지만 주장의 핵심적인 논점을 파악하지 못했구나. 정도로 비판 가능합니다.
- ② 지문 어디에도 현실적 실용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 ③ 지문 어디에도 대중적 공론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 ④ 절반의 성공이라 평가하며 인과적 규명이 실패했다고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 ⑤ 지문 어디에도 경험적 검증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21. ③

<보기>에서 제시한 오페라는 완전한 종합 예술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헤겔의 평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 ① 고대 그리스의 비극은 헤겔이 바라보기에 진리 매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오페라가 현대적 재현을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② 헤겔의 입장에서는 종합적 기법의 완성도와 예술의 진리 매개 기능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 ③ 헤겔의 예술의 종언에 그대로 부합하는 선지입니다.
- ④ 헤겔은 진리 매개의 기능을 하는 예술을 부정한 것이지만 양식적인 발전을 계속하는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 ⑤ 헤겔은 예술의 종언을 불가역적이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예술이 가치 있는 장르가 되기는 어렵다고 볼 것입니다.

WEEK3 2010 LEET 분석

1789년 프랑스 혁명 초기에 제정된 중간집단 금지에 관한 법들은 개인의 활동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는 동업조합, 상인조합은 물론 정당 활동까지 금지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주체로서의 개인만을 사회에 남겼다. 루소는 이미 국가에서 특수의지를 표명하는 부분 집단의 존재를 제거하고 각개의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만을 말하게 함으로써 일반의지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이성을 가진 개인의 합리적인 사회적 행위를 통해 일반 이익을 실현하는 국가 권력을 확립하고자 한 것이었다. 하지만 과연 모든 개인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있었고, 공공질서의 문제에 있어서 개인들의 산술적 합으로서의 '수'가 이성적인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현실적인 보장도 없었다. 이러한 '이성'과 '수'의 긴장은 혁명 시기와 이후 프랑스 정치사에서 '이성'에 의해 표상되는 자유주의와 '수'에 의해 표상되는 민주주의의 갈등으로 표현되었다.

프랑스 혁명 초기에는 오직 이성적인 주체인 개인만을 사회에 남겼다고 합니다. 루소는 특수의지를 표명하는 집단의 존재를 제거하고 개인의 의견만을 말하게 함으로써 일반의지의 형성을 기대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모든 개인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신할 수가 없었나봐요. 그리고 공공질서의 문제에 있어서 개인들의 산술적 합으로서의 '수'가 이성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보장도 없었구요.

그렇게 이성과 수의 긴장이 이성에 의해 표상되는 자유주의와 수에 의해 표상되는 민주주의의 갈등으로 표현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문단을 읽을 때에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하며 읽어봅시다.

우선 혁명 시기 '수에 대한 '이성'의 우위가 드러난 대표적 인 예는 '수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제한이었다. 자유주의자들은 선거를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공적인 '기능'으로 간주하였다. 선거권의 제한은 공적인 결정을 합리화하고 민주주의라는 '수'가 갖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당화되었다. 그들에게 선거는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표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지를 해석하고 일반 이익을 잘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지명하는 행위였다.

이성 > 수인 경우를 먼저 제시합니다. 그에 대한 예시는 수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제한이라고 하네요. 자유주의자(이성)들은 선거를 공적인 기능으로 간주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권의 제한은 민주주의(수)가 갖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당화되었다고 합니다. 자유주의(이성)의 입장에 따르면 선거는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표자가 아닌 시민들의 의지 해석과 일반 이익을 잘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지명하는 행위래요. 음 아직까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유주의(이성)은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표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들을 지명한다! 이정도만 체크하고 다음 문단을 읽어봅시다.

혁명이 급진화되면서 '수로 표상되는 인민의 민주주의적 실천이 등장하였다. 외국과의 혁명 전쟁이 시작되면서 조국의 위기가 선언되고,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었던 상퀼로트들도 국민방위대에 들어갔다. 나아가 그들은 자신들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승인하지 않은 법을 거부하고 주권을 직접 행사하기를 원했다.

3문단에서는 '수' 즉, 민주주의자들이 나옵니다. 전쟁을 하면서 공적 영역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공적 영역에 들어오게 되었나봐요. 이들은 단순히 대표자를 뽑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법은 거부하고 주권 행사를 하며 직접적인 민주주의를 시작했나봐요.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인 대의제와는 다른건가?

하고 생각하면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퀼로트들의 힘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로베스피에르는 인민의 민주주의적 실천을 '덕성'의 이름으로 제한하였다.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는 공화국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민이 공적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덕성'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하면서 공화국의 제도 안에서만 인민의 정치적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한정하였다. 덕성이란 '조국과 법에 대한 사랑이며, 개인적 이익을 일반 이익에 종속시키는 숭고한 자기 희생'이었다. 덕성에 대한 강조는 민주주의의 제한과 대표의 절대화 — 대표와 국민의 일치를 통한 대표의 절대 권력 — 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하지만“ 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의 시작을 제시했으니 당연히 이에 반하는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사람들의 힘을 통해 권력을 얻은 로베스피에르는 민주주의를 덕성이라는 이름으로 제한했다고 하네요. 덕성이란 음 뭐 좋은 말들로 잘 꾸며놨네요. 아무튼! 이 덕성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절대화, 정당화하고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제한했다고 합니다.

1789년 이후 19세기 동안 '이성', '수' 그리고 '덕성' 사이의 긴장 속에서 프랑스는 정치적 혼란의 위협에 시달렸다. **중간집단의 부재를 그 주요 원인으로 들었던** 토크빌이 지적했듯이, **민주주의는 혁명을 통해 절대왕정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중앙집권화에 기반한 거대 권력에 의존함으로써 '이성'과 '덕성'이 약화되어 전제정으로 귀결되었다.** 민주주의자이면서 동시에 귀족정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토크빌은 귀족정 시대 **중간집단의 역할에 다시 주목하였다.** 혁명과 함께 그것들이 사라지면서 개인들은 시민적 덕성을 함양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국가는 그 권력을 제어할 견제 세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토크빌은 ① 민주주의 시대 중간집단이 정치적 자유가 실현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적 덕성을 함양하고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앞에서 나온 문제점들의 원인을 드는 학자가 나옵니다.
토크빌은 중간 집단의 부재를 원인으로 제시하네요.

중앙 집권화에 기반한 거대 권력에 의존한다. 즉 바로 앞 문단에서 제시한 민주주의의 제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중간 집단의 역할에 주목합니다.
중간 집단이 사라지면서 권력을 제어할 견제 세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네요. 즉, 권력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는 게 중간 집단이네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프랑스 혁명을 종결지었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제3공화국은 새로운 사회적 필요에서 중간집단을 다시 허용하였다.** 뒤르케임은 분업이 급속하게 진행된 당시 사회에서 **직업적 도덕을 형성**하고 나아가 **국가와 개인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대표의 기능**을 수행하는 독자적인 직업 집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프랑스 혁명이 발생한 후 백여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중간집단이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다. **또한 19세기 말 정착되기 시작한 정당 체제는 새로운 엘리트 층원 구조이자 여론의 형성자로서 자리 매김 된다.**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색채를 드러내는 정당 체제는 시민과 국가권력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를 통제하는 방식이 되었다.

제3공화국에 와서 중간 집단을 다시 허용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문제점이 나오고 그에 대한 원인이 나오고, 이제는 해결하는 과정이네요.

아무튼 중간 집단이 나오면서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 집단은 무엇을 하는 집단일까요?

뒤르케임이 바라보는 중간 집단의 역할을 제시합니다.
① 직업적 도덕의 형성
② 국가와 개인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대표의 기능

이러한 역할을 하는 중간 집단을 통해 민주주의가 확립되었나 봅니다.

25. ②

① 루소는 특수의지를 표명하는 부분 집단의 존재를 제거하면 일반의지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 제시했습니다. 이를 보아 일반의지 형성에 방해가 되는 중간집단의 제거를 원했겠네요.

② 2문단을 볼 때, 대의제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장치가 아닌 민주주의를 제어하기 위한 방안이네요.

③ 상퀼트르들은 자신들이 승인하지 않은 법을 거부하고 주권을 직접 행사하기를 원하였으니 정치적 권리를 요구한 것이네요.

④ 로베스피에르는 공화국의 제도 안에서만 인민의 정치적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한정하였다고 합니다.

⑤ 뒤르케임은 중간 집단의 역할로 국가와 개인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대표의 기능을 제시합니다.

26. ③

①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시민들에게 이성과 덕성을 갖추게 하면서 성립되었고 그 과정에서 통제할 장치인 중간집단을 제시했습니다.

② 5문단에서 그대로 제시합니다.

③ 이성과 덕성의 긴장을 통해 수의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대표 없이 주권이 직접 행사를 통한 자신들의 민주주의를 실현하였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④ 2문단에서 이성이 4문단에서 덕성이 수의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⑤ 4문단에서 덕성을 매개로 수와 이성을 일치시키려는 시도가 절대 권력을 출현시키기도 했다는 진술을 합니다.

27. ④

먼저, 토크빌의 기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중간집단의 역할을 봅시다. 정치적 자유 실현, 시민적 덕성 함양, 권력 견제이네요.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① 학부모 단체는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을 통해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겠네요.

② 시민 사회 단체는 정부를 대상으로 권력 견제를 합니다.

③ 노동조합이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④ 경제 문제 대책 위원회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이니 권력 견제 기능을 할 수 없겠네요.

⑤ 지식인 학자들의 독자적 집단은 시민 의식을 함양하며 권력에 대한 비판을 한다고 하니까 시민적 덕성 함양과 권력 견제를 하겠네요.

조선시대의 실정법 체계는 한편으로 <대명률(大明律)>과 또 한편으로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등 국전(國典)의 양대 지주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를 전율(典律) 체계라고 한다. 이러한 체제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당초에 조선의 건국자들은 조선을 성문법에 의하여 전일적(全一的)으로 통치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국전 편찬을 시작하려 했지만 그 완비까지는 시일이 걸리므로 가장 시급한 과제부터 처리하려 했다. 그것은 형사 사법 체계 혼란의 극복이었다. 조선의 건국자들은 그 해결책으로 기성의 형법을 그대로 가져와 쓰는 방안을 택하였다. 그리하여 명나라에서 만든 형사법인 <대명률>이 수용되었는데, 태조의 즉위 교서는 이를 언급하고 있다. 이 <대명률>은 보편적인 범죄의 다양한 양상을 일관된 체계 하에 규정하면서도 신분의 차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대명률, 경국대전, 속대전 등이 전율 체계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체제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질문이 나왔으니 체제의 형성 과정에 주목해야겠네요. 이게 화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성문법에 의하여 전일적으로 통치하고자 했지만 오래 걸리죠. 그래서 가장 시급한 과제인 형사 사법 체계 혼란의 극복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명나라에서 만든 형사법인 대명률이 수용되었네요. 그런데 대명률은 보편적이고 일관적인 체계이지만 신분의 차등을 두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체제의 형성 과정, 형사 사법 체계 혼란의 극복 과정을 중심으로 다음 문단을 읽어 봅시다.

그런데 <대명률>은 그것이 외국의 형법이었기 때문에 국전의 편찬과 맞물려 다양한 수용 양태를 보였다. 첫째, <대명률>에 따라 조선의 관행이 변경되는 것이었다. 예컨대 죄질에 상관 없이 칼(枷)을 씌우고 있던 조선의 행형 관행이 장형(杖刑) 이상의 범죄에만 칼을 씌우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둘째, <대명률>의 규정이 조선의 실정에 맞추어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예컨대 처제와 형부 간의 간통의 경우 <대명률>에 의하면 일반 간통으로 처벌되나, 조선에서는 데릴사위제를 취하던 전통에 따라 일반 간통보다 가중하여 처벌하였다. 둘째의 경우 중 국전에 수록되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자식이 부모를 고발한 경우 <대명률>은 무고(誣告)가 아닌 이상 사형보다 낮은 형벌로 규정하였지만, 국전은 사형으로 규정하였다. 셋째, <대명률>에는 없었지만 형사 사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차적 규정을 국전에 두기도 하였다. 예컨대 지방의 관찰사가 사형 판결을 직접 내릴 수 없게 한 규정이 그것이다.

“그런데” 대명률은 외국의 형법이라 맞물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1. 대명률에 따른 조선의 관행 변경
2. 조선에 따른 대명률의 변경
3. 대명률에는 없는 새로운 절차적 규정

한편 전 국토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성문 법전의 완비에는 시일이 걸렸다. 그 이유는 조선 후기까지 이어진 독특한 법전 편찬 과정에 있었다. 조선시대 제정법의 원천은 왕명이었는데 이를 통상 ‘수교(受敎)’라고 한다. 보통 관청이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왕에게 보고하고 왕이 이를 승인하면 이것은 당해 관청에 대해서 유효한 입법으로 성립하였다. 그런데 수교는 계속하여 쌓여 갔고, 전후의 수교 간에 그리고 서로 다른 관청에 내려진 수교 간에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법전 편찬은 전 국토의 전일적 지배와 함께 수교 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각 관청에 내려진 수교 중에서 계속하여 적용할 것을 선택하고 수정하여 육조(六曹)의 행정 체계에 따라 이를 편찬하였다. 이 작업의 최초 결과물은 <경제육전(經濟六典)>으로 이것이 최초의 국전이었다. 그 뒤 새로운 수교가 쌓이자 이 수교들을 모아 <속육전(續六典)>을 편찬하였는데 <경제육전>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문제는 고법(古法)인 <경제육전>과 모순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결하였다. 또한 일시 시행되는 수교를 따로 수록한 국전인 ‘등록(謄錄)’을 별도로 발간하였다. 그리고 이 두 방식을 이후 법전 편찬의 원칙으로 삼았다. 그러나 <속육전>의 증보와 등록의 발간만으로는 수교 간의 충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전대의 국전들을 모아 수정하고 산삭(刪削)하여 이들을 대체하는 법전을 편찬하게 되는데 이것이 <경국대전>이다.

전 국토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성문 법전의 완비에는 시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why? 독특한 법전 편찬 과정 때문이네요.

제정법의 원천은 왕명. 즉, 왕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걸 수교라고 합니다.

관청 → 왕 승인 → 입법

이러한 과정으로 법을 제정합니다. 그런데 수교가 쌓이면서 양도 많아지고 수교끼리 충돌도 하나 봐요.. 문제점이 생기니까 해결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읽어야겠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교 중 계속해서 행할 것을 모아 편찬한 것이 경제육전입니다. 이후에 수교가 쌓이면서 편찬한 것이 속육전이에요. 이렇게 쉽게 해결했나? 싶는데 다시 문제 상황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경제육전과 속육전이 충돌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충돌되는 내용을 속육전에서 삭제하여 해결했네요. (아무래도 경제육전은 편찬 과정부터 계속해서 행할 것을 모은 것이고 속육전은 남은 걸 모은 거니까??)

이후 일시적인 수교를 모은 것인 등록을 편찬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방식과 등록을 법전의 편찬 원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결X → 그래서 그냥 갈아엎은 게 경국대전인가 봐요.

〈경국대전〉 중의 **형전(刑典)**은 〈대명률〉 수용 과정의 산물이었다. 일반적인 범죄의 처벌은 〈대명률〉에 따르고, 조선의 특별한 사정에 관련된 규정은 따로 만들어 〈경국대전〉 형전에 수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전율의 관계는 “〈경국대전〉에 의하여 〈대명률〉을 쓰되, 〈경국대전〉, 〈속대전〉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전에 따른다.”라고 한 〈속대전〉 형전의 용률조(用律條)에서 확인된다.

경국대전 중 형전은 대명률 수용 과정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범죄는 대명률에 따르고 조선의 특별한 사정에 관련된 규정은 따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기본 베이스는 경국대전에 근거하여 대명률을 쓰고, 경국대전과 속대전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걸로 해!

이렇게 하면 2문단에서 제시했던 대명률에 따른 조선의 관행 변경 같은 걸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경국대전 최고. 절 대 경 국 해

32. ④

- ① 경국대전은 경제육전과 속육전을 종합하여 추후에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보완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 ② 전대의 국전들을 모아서 수정 보완하여 만든 것이 경국대전입니다. 따라서 국전인 등록은 포함될 수 밖에 없습니다.
- ③ 조선 후기까지 이어지는 독특한 편찬 과정이라고 제시하였기 때문에 경국대전 이후에도 수교를 통해 법전 편찬에 이용되었을 것입니다.
- ④ 등록은 일시 시행되는 수교를 따로 모아둔 국전이고, 경국대전은 전대의 국전을 바탕으로 수정하고 산삭하여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경국대전에 수록되지 않은 수교가 등록에는 수록되어 있을 수 있겠네요.
- ⑤ 경제육전 편찬 후 수교가 많이 쌓이면서 속육전을 편찬한 것입니다. 따라서 입법 시기는 겹치지 않겠네요.

33. ②

- ① 1문단에서 성문법을 통해 전일적으로 통치하고자 하는 의의를 밝힙니다.
- ② 1문단에서 제시한 전율 체제는 대명률과 국전입니다. 대명률과 국전의 전율 체제는 국전인 경제육전이 나오면서 이미 출현한 것입니다. 법전의 최종 완성이 지연된 것이 전율 체제의 출현 자체가 지연된 게 아닙니다.
- ③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등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 적용 기간을 고려해 법전 종류를 달리하여 편찬했겠네요.
- ④ 대명률의 규정이 조선의 관습에 맞추어 변경되기도 하였다는 점을 데릴사위제에 대한 예시와 함께 설명해주네요. 따라서 성문법주의를 취하였으나 관습이 고려되기도 하였네요.
- ⑤ 수교들과 고법이 충돌하면 모순되는 내용을 수교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전 편찬 과정에서 고법이 존중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겠네요.

34. ①

ㄱ. 대명률과 국전에 관련 규정이 모두 있으면 국전을 채택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후자를 적용하는 것이 맞고, 2문단 셋째 규정, 관찰사는 직접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지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O)

ㄴ. 우선 폭행이니까 형사 사건이네요. 대명률과 경국대전의 관련 규정 중 후자를 적용하는 것. 맞죠? (O)

ㄷ. 처가 남편의 원수를 살해한 사건이니 형사 사건입니다. 대명률과 속대전의 관련 규정 중 전자를 적용한다? 아니죠. 속대전도 국전 중 하나예요. 당연히 후자 적용. (X)

ㄹ. 대명률에 관련 규정이 있고 국전에는 없으면 그냥 대명률을 적용하는 거죠? 여기서도 대명률을 적용 못하면 언제 쓰나요.. 아무튼 대명률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겠네요.

WEEK4 2011 LEET 분석

민간의 채무 계약은 법원에 의해 강제된다. 만약 기업이 채무 상황을 거부한다면 법원의 재판을 통해 자산의 강제 매각 절차나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국가 채무의 경우는 어떠한가? 전통적으로 국가는 스스로의 동의 없이 외국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 원리에 의해 채무의 강제 집행으로부터 보호되어 왔다. 국가의 상업적 거래에는 주권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지만, 여전히 국가 채무의 이행은 법원을 통해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

민간의 채무 계약은 법원에 의해 강제된다고 하면서 지문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국가 채무의 경우는 어떠한가? 라고 제시하네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채무를 중심으로 읽는다. 민간의 채무와 국가의 채무를 비교 대조하면서 읽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좋겠조?

전통적으로 국가는 국가의 동의 없이 외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국이 외국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주권 면제 원리이구요.

오늘날에는 상업적 거래. 즉, 채무와 같은 거래는 주권 면제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추세라고 하네요. 음. 그런데 여전히 국가 채무의 이행은 법원을 통해 강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주권 면제의 원리가 남아있나 봐요? 약간 모순적이네요. 지문에서 해결해주지 않을까 하며 의문점을 남긴 채 다음 문단 읽어봅시다.

이러한 까닭에 많은 경제학자들은 국가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나 구제 절차가 매우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채무가 상환되는 이유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답을 찾자 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의 출발은 이튼의 고전적 가설이다. 그는 GDP가 감소할 때 채무국이 해외 차입 이외의 방식으로 GDP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고 채무불이행이 신용시장에서의 영구적인 배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신용시장에 다시 접근할 수 없게 된다는 위협이 채무 상환의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보았다.

경제학자들은 국가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나 구제 절차가 매우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채무가 상환되는 이유를 찾으려고 했답니다.

이에 대하여 고전적 가설이 등장하였습니다.

고전적 가설에 따르면 국가의 GDP가 감소할 때 이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을 해외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불이행이 신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채무 상환을 한다고 바라봅니다.

즉 쉽게 정리하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면 다음에는 안 빌려주겠조?

이후 이 가설은 두 가지 점에서 강한 비판을 받았다. 하나는 GDP가 감소할 때 해외 차입이 총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는 가정에 대한 비판이었다. 불황에 대비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할 경우에는 불황 시 총수요 유지를 위한 해외 차입의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므로 신용시장에서 배제하겠다는 위협의 효과가 약화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채무불이행 시 신용시장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는 가정에 대한 비판이었다. 일단 채무불이행이 일어난 후에는 채권국의 입장에서 영구 배제보다 신용거래 재개가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증 자료도 이튼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다. 지난 30년 동안 채무불이행을 경험한 국가들은 빠른 시간 내에 국제자본 시장에 다시 접근할 수 있었다. 채무불이행 이후 자본시장 접근이 배제되는 기간은 1980년대에는 평균 4년이었으며, 이후에는 2년 이내로 더 짧아졌다.

2문단에서 제시한 가설을 비판합니다.

먼저, 불황에 대비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다른 수단이 존재할 경우를 들어 비판하네요.

두 번째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신용시장의 영구적 배제에 대한 가정을 비판합니다. 채무불이행이 일어난 후에 채무불이행을 한 채무국만이 아니라 채권국의 입장에서 신용거래 재개가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면서 통계를 통해 신용거래 재개의 사례를 들어주네요.

이튼 이후의 연구자들은 이튼 가설의 가정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새로운 가설을 구축하려고 하였다. 이 가설들은 대략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가설은 채무 상환의 이유를 무역 제재나 자산 동결 같은 채권국의 직접적인 제재에서 찾는다. 둘째 가설은 차입 비용의 상승 같은 신용시장의 반향을 우려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논리에 기초한다. 셋째 가설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국의 국내 경제에 나타나게 될 피해에 주목한다.

이후에 등장한 가설들은 이튼 가설의 가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튼 가설의 가정을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채무 상환의 가설이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채권국의 직접적인 제재에서 찾습니다.

둘째로 신용시장의 반향에 대한 우려에서 찾습니다.

셋째로 채무국의 국내 경제에 나타날 피해에서 찾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실증 작업은 채무불이행 이후 가해진 제재의 효과와 국내 경제적 피해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채권국의 직접적 제재 효과는 주로 무역량의 감소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다. 실제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국가들에서 무역량이 감소한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하지만 무역량 감소 기간이 3~4년 정도로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무역 제재 위협이 채무 이행의 이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앞에서 나온 3가지 가설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먼저, 채권국의 직접적 제재 효과는 무역량의 감소 정도를 측정하여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역량 감소 기간이 길지 않아 가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그렇듯한 관계를 보이지만 약간 부족하다. 정도로 생각하며 다음 문단을 읽어봅시다.

다음으로 신용시장에서의 평판 효과는 차입 금리의 높낮이를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다. 1997~2004년의 자료에 기초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채무불이행 이후 1년 동안은 가산 금리가 4% 포인트 상승했지만 2차년도에는 2.5% 포인트로 낮아졌으며, 3차년도 이후에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다.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가산 금리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빠르게 하락한다는 점에서 신용시장 평판 하락이 채무 이행의 이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는 둘째 가설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합니다. 이는 차입 금리의 높낮이를 측정하여 알 수 있는데,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둘째 가설도 채무 이행이 이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끝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국내 경제적 피해 여부는 GDP 증가율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다. 최근의 실증 연구들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은 GDP 증가율을 약 0.6% 포인트, 은행 위기를 동반할 경우에는 2.2% 포인트나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채무불이행 발생 1년 이후부터는 채무불이행이 GDP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일시적 GDP 증가율 하락도 영구적인 손실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GDP 감소를 초래하는 구체적 경로가 밝혀진다면 이 가설의 설명력은 더 커질 것이다.

셋째 가설에 대한 검증을 합니다. 국내 경제적 피해 여부는 GDP 증가율의 변화를 측정하여 알 수 있는데, 채무불이행만 일어날 경우 0.6% 포인트 감소했다고 합니다. 만약 채무불이행과 은행 위기가 함께 일어난 경우에는 2.2%포인트가 감소했다고 하네요.

1년 이후에는 앞서 말한 가설의 검증들과 같이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기 어렵지만 일시적인 하락이 영구적인 손실로 나아가기 때문에 가설이 어느 정도 맞다고 제시합니다.

마지막에 채무불이행이 GDP감소를 초래하는 구체적 경로가 밝혀진다면 이 가설의 설명력이 더 커질 것이라 제시하며 지문을 마무리합니다.

41. ③

① 고전적 가설은 신용시장 배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 첫째 가설은 채권국의 직접적인 제재에 따른 경제적 손실, 둘째 가설은 신용시장의 반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셋째 가설은 GDP 감소 등의 경제적 손실을 고려합니다.

②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나 구제 절차가 매우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채무가 상환되는 이유에 대한 가설입니다. 가설이 왜 나왔는지 주제 파악을 했더라면 바로 거를 수 있는 선지네요.

③ 신용시장에서 채무국을 배제하는 것이 채권국에 영향을 끼친다고 가정하는 것은 고전적 가설이 아닌 고전적 가설에 대한 비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④ 첫째 가설과 그대로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가설은 채권국의 직접적인 제재를 채무 상환의 이유로 찾습니다.

⑤ 둘째 가설과 그대로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가설은 신용시장의 반향을 채무 상환의 이유로 찾습니다.

42. ⑤

① 외국의 법원에서 주권 면제의 원리가 발생하는 것은 국가입니다.

② 전통적으로 국가는 스스로의 동의 없이는 재판을 받지 않는 주권 면제의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문장에서 스스로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상업적 거래의 경우 주권 면제의 원리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으로 강제 집행이 어렵지만 재판을 받을 수는 있겠네요.

③ 채무불이행 이후 가하는 제재의 효과는 계량적 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④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제재를 하는 것은 채권국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채무국은 제재를 당하는 입장이지요.

⑤ 채무불이행에 대한 GDP 증가율의 하락은 일시적인 게 맞습니다. 증가율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영구적인 것이죠.

43. ④

(가)의 해외 자본 유입 그래프는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 2년의 짧은 자본시장 배제가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은 고전적 가설을 비판하는 내용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고전적 가설의 타당성을 약화하는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나)의 수출 그래프는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소도 아니고 증가하고 있으니 당연히 타당성을 약화하는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다)의 가산금리 그래프는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 1년 이내에서만 증가한 상황을 보입니다. 2년 이후에는 가산금리가 거의 0에 수렴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는 가설의 타당성을 약화하는 증거가 되겠네요.

(라)의 GDP 증가율 그래프는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 5년 이후에도 과거의 증가율을 보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GDP 증가율의 감소가 일시적이더라도 영구적인 손실로 이어진다는 가설의 타당성을 강화하는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1587년 프랑스의 한 마을 주민들이 포도 농사를 망친 곤충 바구미 떼를 인근 교회 법원에 고소했다. ㉠ 주민의 변호인은 성서를 인용하여,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권리를 가지며 자연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인간에게 봉사하고 복종하는 데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원에 의해 선임된 ㉡ 바구미의 변호인은 신은 동물에게 번식과 생존을 명했으며 바구미는 자연법이 인정하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결국 주민들은 바구미의 권리를 인정하되 대체 서식지를 증여하는 계약을 바구미와 체결했다.

포도 농사를 망친 곤충 바구미 떼를 인근 교회 법원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곤충을 고소한다?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의 변호인은 성서를 인용하여 법원에서 주장했다고 합니다. 성서를 인용했다는 걸 보니 교회 법원에서는 성서가 법전과 같은 역할을 하나? 의심해볼 수 있겠네요. 바구미의 변호인은 바구미의 행위가 자연법이 인정하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변론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교회 법원이니까 성서가 곧 법전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의심해볼 수 있으니 주민은 성문법(실정법)을 근거로 바구미는 자연법을 근거로 재판했나 봅니다.

결국 주민들은 바구미의 권리. 즉, 자연법의 주장을 인정하되 대체 서식지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연법의 주장을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 문단 읽어 봅시다.

당시 유럽에서는 이런 식으로 동물이 교회 권력 혹은 국왕이나 영주 등의 세속 권력에 의해 재판을 받는 일이 있었다. 세속 재판에 회부된 동물 피고는 주로 사람을 죽인 가축들이었다. 돼지가 가장 흔했고, 소, 말, 개도 범정에 섰다. 교회 재판에서는 인간에게 해를 끼친 작은 동물이나 곤충들이 피고가 되었다. 재판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소송 절차를 엄수하였다. 유죄가 증명되면 세속 법원은 관습법에 따라 사형을, 교회 법원은 교회법에 근거하여 저주와 파문을 선고했다.

유럽에서는 동물이 재판을 받는 일이 꽤 있었나봐요? 세속 권력에 의해 재판을 받는 일인 세속 재판과 교회 재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속 재판에 회부된 동물은 주로 사람을 죽인 동물이고 교회 재판에는 사람에게 해를 끼친 동물이라고 하네요.

재판 절차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했고. 세속 법원은 관습법의 적용을 교회 법원은 교회법의 적용을 하였네요. 1문단에서 나온 사례가 교회 재판이니 교회법 = 성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물 재판 관행은 13세기부터 본격화되어 16세기에 정점에 이르렀다. 이 시기 유럽에서는 고대 로마법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세속과 교회에서 법학이 발전하는 등, 근대법을 위한 기반이 다져지고 있었다. 이런 시기에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혹자는 이 물음의 답을 동물과의 충돌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생활 조건과 동물을 의인화하는 민중 문화에서 찾기도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시 성·속의 엘리트들이 이 관행을 이론·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동물 재판 관행은 16세기에 정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관행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원인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동물과의 충돌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생활 조건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속의 엘리트들이 이론, 실무적으로 뒷받침했던 게 원인이라고 제시합니다.

동물 재판은 13세기 이후 공권력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된 새로운 재판 제도하에서 이루어졌다. 중세 초기의 재판 제도는 사실상 개인들의 자력 구제를 재판의 형식에 집어넣은 수준에 불과했다. 민사와 형사 재판의 구별도 모호했고, 공적인 형벌 제도도 없었다. 이에 반해 새로운 재판 제도에서는 합리적인 소송 규칙에 따라 법원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권력이 동물을 상대로 한 소송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13세기 이후 동물 재판은 새로운 재판 제도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새로운 재판 제도에서는 합리적인 소송 규칙을 만들었고 / 법원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합니다. 기존 방식은 세속 권력이나 교회에서 판결을 내린 반면 법원이 판결을 내리니까 좀 더 정당성이 있어 보이죠?

동물 재판을 옹호한 엘리트들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성서에 나오는 뱀에 대한 저주의 사례라든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인 소를 돌로 쳐 죽이게 한 모세의 율법 등을 원용하였다. 그것들은 세속 법원과 교회 법원의 동물 재판 관행에 대한 법리적 비판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증거*들이었다. 인간을 포함한 만물은 인간을 정점에 둔 위계적 질서 속에서 신이 부여한 본성에 따라 살아간다고 보는 기독교적 자연법론도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우주의 법질서는 신의 섭리로 간주되는 영원법, 그것을 인간 이성으로 파악한 보편타당하고 불변적인 자연법, 그리고 인간이 정한 인정법으로 구성된다. 인간과 자연은 자연법에 구속되며, 자연법에 반하는 인정법은 법적 효력이 없다.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여 앞의 바구미 사건에서와 같은 논쟁도 가능했고, 동물이 사물의 자연적 질서를 반하면 범죄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도 성립하였다. 엘리트들의 관점에서 동물 재판은 동물을 영원법과 자연법에 복종시키기 위한 엄숙한 절차다. 그들은 동물 재판을 통해 자신들의 법과 정의의 개념을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자연계까지 적용하고자 했다. 그런 의미에서 동물 재판은 13세기 이후 등장한 인간 중심적 법 개념에 의한 자연의 영유(領有)*를 보여 준다. 이렇게 해서 동물 재판은 엘리트들의 보증하에 민중 문화와 상호 작용하며 현대인의 눈에 기괴하게 보이는 광경을 연출하였던 것이다.

성서에 나온 동물에 대한 판례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법리적 비판에 맞선 강력한 증거로 작용했고 기독교적 자연법론도 근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법은 신의 섭리로 간주되는 영원법.

보편타당하고 불변한 자연법.

인간이 정한 인정법.

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연법에 반하는 인정법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네요.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여 동물이더라도 자연적 질서에 반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를 주장합니다.

그 결과로 동물 재판은 엘리트들의 보증하에 민중 문화와 상호 작용하며 존속했다는 것이네요.

그 시대에 동물 재판이 가졌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가진 문화적 퍼포먼스로서의 기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돼지가 아이를 물어 죽이고 수탉이 달걀을 낳는 사태 앞에서 동물 재판은 판결에 이르는 법적 절차를 통해 사태를 설명하는 서사를 구성하고 '본성을 벗어난' 동물을 처벌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을 극복하고 평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그들의 세계와 질서가 안전하며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물 재판을 통해 본성을 벗어난 동물을 처벌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의 세계와 질서가 안전하고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49. ④

④ 동물 재판에 적용된 소송 규칙은 인간에 적용하는 소송 규칙과 동일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자연법은 추상적인 명제나 원칙을 담을 순 있어도 법적 소송을 위한 구체적인 법 규칙을 포함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독교적 자연법에 재판 절차에 관한 규칙이 있었다는 건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50. ⑤

[A]는 동물 재판이 가졌던 문화적 퍼포먼스로서의 기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단순히 재판이 가지는 처벌의 기능이 아닌 사회적 기능에 주목하여 선지를 판단해야겠네요.

① 사실 관계와 죄책을 규명하여 응보의 근거를 확보하였다는 내용은 재판 기능에만 해당합니다.

② 인간과 동물을 하나의 법 질서 체계로 묶은 것이지 교회법에 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1문단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③ [A]의 내용에 부합한다고 혼동하기 쉬운 선지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인간에게 도덕적 교훈을 준다는 내용이 아닌 자신들의 세계의 질서가 안전하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④ 지배 질서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동물 재판을 했다는 내용은 [A]에는 너무 벗어난 선지입니다.

⑤ 동물 재판을 통해 사람들에게 혼란을 극복하고 평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고, 그들의 세계와 질서가 안전하고 정당하다는 걸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인간의 규범을 통해 사태에 대한 통합적 해석을 얻고 질서 회복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게 하였다는 내용은 [A]에 부합하네요.

51. ③

먼저, 원고의 주장을 봅시다. 인간은 자연에 대해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자연과 인간은 하나라고 봅니다. 현행법상 법인에 법인격을 부여하듯 자연물에 대해 법적 주체성을 부여하자고 주장하네요. 자연이 주체성을 가질 수 있는가?를 알아보시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성문법과 관습법상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 도롱뇽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자연의 주체성을 부정한 것이네요.

ㄱ에 해당하는 주민의 변호인을 봅시다. 주민의 변호인은 인간의 동물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합니다. 즉 자연의 주체성을 부정하겠네요.

ㄴ에 해당하는 바구미의 변호인을 봅시다. 바구미의 변호인은 바구미의 자연법상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자연의 주체성을 인정하겠네요.

이제 선지를 봅시다.

① (가)는 인간이 자연에 대해 특별한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보는 반면 ㉠은 인간이 자연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다고 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겠네요.

② (가)는 현행법상의 해석으로 법인격과 같이 자연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은 자연법에 의거하여 바구미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가)와 ㉡ 모두 자연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기 위해 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③ ㉠은 기독교적 자연법론의 입장을 취합니다. 이에 따르면 자연법에 반하는 인정법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나)가 근거로 삼은 성문법과 관습법보다 ㉠이 근거로 삼은 자연법이 상위의 것이라고 보겠네요.

④ (나)는 성문법이나 관습법과 같은 인정법을 우선으로 하여 판결을 내리지만 ㉡은 자연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입장이 일치하지 않겠네요.

⑤ ㉠과 ㉡이 주장하는 바구미의 권리를 인정 유무에 관한 문제는 자연법에 근거하여 논의한다. 자연법은 기본적으로 신의 섭리 해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 ㉡이 이것을 신의 섭리 밖의 문제라고 본다는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2009 LEET				
1	2	3	4	
③	①	②	④	

[38~42] 2018.11				
13	14	15	16	17
②	②	⑤	④	④

2010 LEET			
25	26	27	
②	③	④	

[16~21] 2018.06					
35	36	37	38	39	40
⑤	②	③	①	②	①

2011 LEET			
49	50	51	
④	⑤	③	

[16~20] 2019.11				
5	6	7	8	9
③	⑤	①	③	①

2009 LEET			
18	19	20	21
③	①	①	③

[21~24] 2015.11B			
28	29	30	31
①	②	①	⑤

2011 LEET		
41	42	43
③	⑤	④

[26~30] 2015.09A				
52	53	54	55	56
③	④	④	⑤	②

2009 LEET		
10	11	12
⑤	④	③

[21~23] 2014.09B		
22	23	24
①	③	①

2010 LEET		
32	33	34
④	②	①

[16~20] 2019.11				
44	45	46	47	48
③	⑤	①	③	①